

KISO

2016 Vol.23 JOURNAL

정책 및 심의결정 리뷰

회사명이 변경된 경우의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결정 리뷰 / 황성기

기획동향

자기계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에 관한 일고찰 / 전응준

인터넷방송 플랫폼 서비스 규제방안에 대한 고찰
- 사업자 · 기업 · BJ의 사회적 책무 등 현황 및 개선방안 / 강장묵

법제동향

회피연아 사건에서 통신자료 제공에 대한 재검토
(대법원 2016.3.10. 선고 2012다105482) / 손형섭

인공지능을 둘러싼 법의 관심과 그 지향점에 관한 일고(一考)
- 미국의 인공지능과 법에 관한 논의 동향을 중심으로 / 윤혜선

유럽연합(EU)의 로봇법(RoboLaw) 프로젝트 / 이원태

국내외 주요소식

유럽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승인의 의미와 전망 / 최승재
포털사이트의 20대 총선 특집 서비스 특징 / 장우영

이용자 섹션

인터넷, 20대 국회에 바란다 / 김익현

해외 자율규제 기구 소개

해외 인터넷 자율규제의 동향 및 시사점 / 김유향

문화시평 <도서>

브루스 슈나이더 저,
「당신은 데이터의 주인이 아니다」-데이터와 골리앗 / 김민정

KISO NEWS

'KISO 자율규제 백서 Vol.2 발간' 등



KISO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Korea Internet Self-governance Organization

KISO리얼 홈페이지 | journal.kiso.or.kr | ISSN | 2287-8866(Online)

회사명이 변경된 경우의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결정 리뷰

황성기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Keyword>
회사명, 연관검색어, 성명권

1. 심의결정의 쟁점 및 주요 내용

가. 사건의 배경과 쟁점

이 사건 심의결정[2016심2]의 기본적인 실제적 쟁점은 회사명이 변경된 경우에 기존 회사명과 새로운 회사명이 연관검색어로 같이 노출되는 것이 신청인 회사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어서 해당 연관검색어가 제한 또는 삭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 심의대상은 신청인 회사의 명칭으

로 검색하였을 때 연관검색어로 나타나는 16개의 검색어인데, 신청인이 삭제 등의 조치를 요청한 검색어들과 관련하여 이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위원회가 2013년 7월 24일에 심의결정(2013심42)¹⁾을 한 바 있으나, 최근 신청인 회사의 명칭이 바뀌고 그 바뀐 명칭에 의한 검색결과에 기존의 검색어가 나타난다는 이유로 재심의를 요청한 것이다.

1) 2013심42 결정의 심의대상은 사기업인 신청인과 관련된 41건의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 검색어이었다. 신청인은 삭제요청 대상 검색어가 최근 언론 등에서 보도된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 졌지만, 해당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삭제를 요청하였다. KISO 정책위원회는 해당 검색어는 기 방송된 시사 방송에서 생성된 검색어로, 방송된 내용은 형 집행의 공정성이라는 주제에 입각하여 공공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한 형 집행의 공정성은 법치주의의 근간인 사법적 공정성의 핵심을 이루는 것으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해당 검색어와 신청인 간의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노출이 이루어짐으로써, 공공의 알 권리에 비해 신청인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 피해가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있지 않을 뿐더러, 최근 검찰이 신청인을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압수수색한 사실과 앞서 언급한 시사 방송물의 내용 등을 미루어 볼 때 동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더 나아가,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해 볼 때, 해당 사안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가 두텁게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 또한 고려하였다. 다만 심의대상 검색어 중, 언론 등에서 노출되지 않은 인물을 포함한 검색어 2건은 개인정보 노출 및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있어 이를 삭제하기로 결정하였다. 결론적으로 KISO 정책위원회는 심의대상 검색어 중 39건을 '해당없음'으로, 2건을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로 각각 결정하였다.

나. 심의결정의 주요 내용

심의대상에 적용된 규정은 「(사)한국인터넷 자유통계기구 정책위원회 정책규정」 제13조 제1항 제3호이다. 정책규정 제13조 제1항 제3호는 “제5조제2항의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로서,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 또는 공적 관심사와 관련이 없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이거나, 일정 기간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론화 되지 않은 사유 등으로 그와 관련된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관검색어 등을 제외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KISO 정책위원회는 신청인은 사기업으로 정책규정 제13조 제1항 제3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검색어의 내용이 공공의 이익 또는 공적 관심사와 관련이 없는지 여부와, 해당 검색어와 관련하여 일반인의 알 권리보다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더 큰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해당 검색어는 2013년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던 범죄사건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사명을 바꾸기 전의 회사와 관련이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후 생성된 검색어로, 신청인은 경영진을 교체하고 사명을 바꿨기 때문에 자사의 명예가 훼손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KISO 정책위원회는 2015년 3월 신청인의 사명이 변경되고, 대표이사가 변경된 것은 확인되지만, 기존 대표이사 및 그 특별관계인이 총 46.57%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어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기존의 경영진과 현재의 회사가

관련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최근 피해자의 어머니가 사망하여 언론에 보도되는 과정에서도 신청인의 회사가 직접적으로 실명 보도되고 있는 점, 그럼에도 신청인이 이러한 언론보도에 대하여 정정보도 등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해당 사안이 사법의 정의라는 중대한 공익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본 사안의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호가 신청인의 명예훼손보다 더욱 중시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하였다.

다만 신청인이 요청한 검색어 중, 신청인과는 무관하지만, 피해자의 성명이 노출되는 것과 신청인과 무관한 제3자의 이름이 노출되는 것은 신청인이 아닌 해당 성명 주체의 인격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삭제하기로 하였다.

결론적으로 KISO 정책위원회는 심의대상 검색어 중 13개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나머지 3개에 대해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로 각 결정하였다.

2. 심의결정의 의의

이 사건 심의결정의 기본적인 실체적 쟁점은 회사명이 변경된 경우에 기존 회사명과 새로운 회사명이 연관검색어로 같이 노출되는 것이 신청인 회사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어서 해당 연관검색어가 제한 또는 삭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인바, 이것은 법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인격권의 한 내용으로서의 성명권 보호의 문제와 관련될 수 있다.²⁾ 왜냐하면 성명권에는 성명 주체의 ‘익명권’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자신이 언급되기

를 원하지 않는 사실과 관련하여, 검색어를 통해 자신의 성명이 언급됨으로써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밝히기를 거부할 수 있는 성명 주체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³⁾ 하지만 성명 주체의 익명권도 공공의 알 권리에 의해 제한받을 수 있다. 즉 성명 보호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 간의 비교형량 결과 후자가 우선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⁴⁾

우선 이 사건 심의결정에서는 성명 보호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 간의 비교형량의 단계 이전에, 회사명이 변경된 경우에 있어서 기존 회사명과 새로운 회사명의 동일성, 즉 기존 회사와 새로운 회사 간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첫 번째 쟁점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의 사명이 변경되고 대표이사가 변경된 것은 인정되지만, 기존 대표이사 및 그 특별관계인이 총 46.57%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어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기존의 경영진과 현재의 회사가 관련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즉 회사명이 변경된 경우에 있어서 기존 회사와 새로운 회사 간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회사의 실질적 소유관계를 중요한 요소로 고려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정책규정 제13조 제1항 제3호는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관련된 연관검색어 등의 제외 또는 삭제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로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첫째,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 또는 공적 관심사와 관련이 없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이다. 이 사건 심의결정의 심어대상이 된 검색어는 새로운 회사명과 관련된 검색어이고, 2013년 7월에 이루어진 2013심42 결정의 심의대상은 기존 회사명과 관련된 검색어였다. 2013년 7월에 이루어진 2013심42 결정에서 KISO 정책 위원회는, 해당 검색어는 기 방송된 시사 방송에서 생성된 검색어로, 방송된 내용은 형 집행의 공정성이라는 주제에 입각하여 공공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한 형 집행의 공정성은 법치주의의 근간인 사법적 공정성의 핵심을 이루는 것으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회사명이 변경된 경우에 있어서 기존 회사와 새로운 회사 간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새로운 회사명과 관련된 검색어도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렇다면 회사명이 변경된 경우라 하더라도, 성명 주체의 동일성 여부, 관련 사안의 성격 등에 따라 성명 보호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 간의 비교형량이 필요하고, 결국 동일성이 인정되고 관련 사안이 공공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면, 검색어가 갖는 공공의 이익이 성명 보호의 이익보다 우월하다는 법리가 이 사건 심의결정

2) 자연인이 아닌 법인이 인격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긍정하고 있다. 헌재 2012. 8. 23. 2009헌가27, 방송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 “법인도 법인의 목적과 사회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격권의 한 내용인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등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법인이 이러한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유지 내지 법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위하여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법인의 인격권의 한 내용을 이룬다고 할 것이다.”(밀출 필자 강조) 이 사건에서는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법인인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내려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 중 시청자에 대한 사과명령의 위헌 여부가 문제되었는데, 헌법재판소는 위헌결정을 내렸다.
3) 언론보도에 있어서의 익명보도의 원칙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적용되는 것이다. 물론 검색어는 언론보도와는 다르다. 하지만 검색어를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밝히기를 거부할 수 있는 성명 주체의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면, 성명권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여지는 있을 것이다.
4) 박용상, 「명예훼손법」, 현암사, 2008, 519면.

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일정기간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론화 되지 않은 사유 등으로 그와 관련된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이다. 이 요건과 관련하여, KISO 정책위원회는 최근 피해자의 어머니가 사망하여 언론에 보도되는 과정에서도 신청인의 회사가 직접적으로 실명 보도되고 있는 점, 신청인이 이러한 언론보도에 대하여 정정보도 등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해당 사안이 사법의 정의라는 중대한 공익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국민의 알 권리 보호가 신청인의 명예훼손보다 더욱 중시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하였다. 이 요건과 관련하여 주목을 요하는 부분은 바로 ‘일정기간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론화 되지 않은 사유’이다. 즉 성명 보호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 간의 비교형량에 있어서 전자가 우선하는 경우의 대표적인 예로 ‘일정기간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론화 되지 않은 사유’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의 언론보도를 통해 신청인의 새로운 회사명이 직접 실명 보도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본 사안은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밖에 KISO 정책위원회가 고려한 사유로서 신청인이 이러한 언론보도에 대하여 정정보도 등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해당 사안이 사법의 정의라는 중대한 공익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 등은 성명 보호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 간의 비교형량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고려한 요소라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KISO 정책위원회는 신청인이 요청한 검색어 중, 신청인과는 무관하면서도 연관검색어가 형성된 원인을 제공했던 관련사

건 피해자의 성명이 노출되는 것과 신청인과 무관한 제3자의 이름이 노출되는 것은 신청인이 아닌 해당 성명 주체의 인격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삭제하기로 하였는바, 연관검색어를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명예훼손의 위험성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한 것으로서 적절하고도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생각된다.

3. 나오는 말

이 사건 심의결정[2016심2]은 연관검색어나 자동완성 검색어 등 검색어의 제한 또는 삭제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회사명이 변경된 경우라 하더라도, 성명 보호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 간의 비교형량에 있어서는 성명 주체의 동일성 여부, 관련 사안의 성격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동일성이 인정되고 관련 사안이 공공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면, 검색어가 갖는 공공의 이익이 성명 보호의 이익보다 우월할 수 있다는 점 등의 법리를 제시한 것으로 이해된다.

물론 성명 주체는 자신의 성명을 바꿈으로써 특히 자신의 어두운 과거와 단절하여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 욕구와 자유를 갖고 있고, 또한 이것을 인정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법인인 회사도 회사명 변경을 통해서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유지를 원할 수 있다. 이러한 욕구와 자유는 인격권이라고 하는 권리의 보호대상이 되는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민주사회에서는 인격권이라는 권리나 가치 이외에도 공공의 알권리

라는 권리 내지 가치도 분명히 존재한다. 이 두 가지 가치 간의 충돌이 발생하였을 경우, 어느 가치를 우선시킬 것인가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심의결정이

그러한 가치 간의 형량에 있어서 나름대로 중요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KISO JOURNAL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에 관한 일고찰

전웅준 / 법무법인 유미 변호사

<Keyword>

동의철회권, 개인정보 처리정지요구권, 표현의 자유, 알권리

1.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의 제정

2014년 5월 유럽연합(EU) 사법재판소가 ‘잊혀질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에 관한 판결을 한 후,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위 판결은 언론의 자유에 따라 정보주체가 언론사에게 기사 원본의 삭제를 요구할 수는 없지만 부정확하고 (inadequate) 무관하고(irrelevant) 더 이상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no longer relevant or excessive)한 게시물(기사)에 대하여는 검색엔진에게 해당 게시물의 검색 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위 ‘잊혀질 권리’ 판결의 사안은 언론사, 검색엔진 등의 제3자가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기록, 공개하는 경우였고, 정보주체 스스로 작성한 개인정보 성격의 게시물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 우리나라의 법률체계를 보면, 제3자가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을 작성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의 임시조치, 언론

중재법의 정정·반론·추후 보도청구 등의 법적인 구제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정작 정보주체 스스로 공개한 게시물에 대하여는 회원 탈퇴 등으로 게시물의 관리권을 상실한 경우 해당 게시물의 삭제 등의 구제가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여러 논의 끝에 금년 4월 자기게시물의 접근배제요청절차를 구체화한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6월 중부터 준비된 사업자에게 위 가이드라인의 자발적인 준수를 권고하겠다는 발표를 하게 되었다.

2. 가이드라인의 법률적 근거

자기게시물에 대하여 작성자 본인이 삭제 등의 접근배제를 요청하는 것은 당연하므로 법적 근거를 논할 특별한 실익이 없다고 보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자기게시물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민법상의 절대적인

소유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고 게시물을 인터넷에 공개한 이상 이에 대하여 타인이나 공익적인 여러 이해관계가 형성된다고 보아야하기 때문에 헌법상 기본권제한과 같이 실정법에 의한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하다.

위 가이드라인은 “헌법상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책무 등에 근거하여 이용자 본인이 인터넷상 게시한 게시물에 대하여 타인의 접근 배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위 가이드라인은 ‘자기 게시물’이 개인정보의 성격을 띤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명확하게 법률적 근거를 적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위 가이드라인의 법적 근거는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이라고 생각된다.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프레임에 따르면, 게시판 관리자에 대한 자기 게시물 접근 배제요청권은 정보통신망법의 ‘이용자의 동의 철회권’(제30조)에 해당하고, 검색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자기 게시물 검색목록배제요청권은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 처리정지요구권’(법 제37조)에 해당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관계에 있는 게시판 관리자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지만, 정보주체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검색서비스 사업자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검색목록배제요청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법이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된다고 해석된다.¹⁾ 그러므로 위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정보통신망법의 동의철회권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처리정지요구권을 기초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들 법률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가이드라인의 법률적합성이 논해져야 한다.

한편, 자기게시물이 의견이나 논평 등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람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저작물에 해당하여 저작권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 저작권자는 저작물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타인이 무단으로 저작물을 복제·전송한 경우 이를 금지하고 폐기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최초에는 자기게시물의 복제·전송에 대한 이용허락을 하였더라도 추후 이를 철회하고 게시판 관리자나 검색서비스 사업자에 대하여 자기게시물의 복제·전송의 금지, 삭제를 요구할 수도 있다(계약에 이용허락의 임의적인 철회 내지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다만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이 유체물인 경우 그것이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이를 회수하거나 폐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법 제21조).²⁾ 이를 권리소진의 원칙 내지 최초 판매의 원칙이라고 한다. 예컨대 특정 의견을 제시한 책을 출간한 저작권자가 나중에 이를 번복하고 출간사실 자체를 감추기 위하여 이미 판매된 책을 저작권에 기하여 구매자로부터 회수하려고 할 때 위 원칙은 저작권의 행사를 부인한다. 위 원칙의 구체적 결과는 권리자로부터 더 이상 구매할 수 없는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인간의 지적창작물은 창작자만의 독창성의 결과라기보다는 과거로부터의 문화적·기술적 창작의 집합물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권

1)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2도4387판결. 정보통신망법은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는 관계를 전제로 한다.
2) 저작권법 제20조 제20조(배포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리소진론에 의하여 저작물이 계속하여 전송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사회적으로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³⁾ 여기서 논하는 ‘인터넷 자기게시물’에 위 권리소진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⁴⁾ 그러나 역사·문화의 전송이라는 측면에서는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으므로 저작권에 기하여 자기게시물의 접근배제를 논하는 것은 저작권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인터넷 자기게시물은 개인정보의 성격과 저작물의 성격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작동하면서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다양한 공정이용(fair use)의 사유를 발전시킨 저작권법의 경험과 취지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3. 가이드라인의 내용 및 검토

위 가이드라인의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기게시물 접근배제를 원하는 이용자는 일단 본인이 직접 자기게시물을 삭제하는 것을 시도하여야 하고, 회원 탈퇴 등으로 직접 삭제가 어려운 경우 게시판 관리자에게 접근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접근배제의 방식은 게시물에 대해 블라인드 처리를 함으로써 제3자가 접근배제조치가 있음을 알 수 있도록 한다. 게시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망인의 유족이 접근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 검색에서도 배제되기를 원한다면 이용자는 게시판 관

리자로부터 접근배제조치를 얻은 후 검색서비스 사업자에게 검색목록 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게시판 관리자의 사이트 관리 중단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해 게시판 관리자가 접근배제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검색서비스 사업자에게 바로 검색목록 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접근배제요청의 거부사유로는 사업자가 법령상의 의무에 의하여 해당 게시물의 보존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해당 게시물이 공익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⁵⁾ 접근배제조치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가능한데, 접근배제당한 게시물이 접근배제 요청인이 게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게시한 것임을 주장하는 제3자는 사업자에 대하여 접근재개를 요청할 수 있다.

위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정보통신망법의 동의철회권, 개인정보보호법의 처리정지요구권에 비추어 보면 대체로 위 법률 규정의 범위 안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자기게시물이 반드시 법률상 개인정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으나 개인정보의 범위는 사실상 제한되지 않고 개인에 관한 일체의 정보로 해석되므로 게시자 본인의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기재하는 순간 이는 법률상 개인정보로 인정된다. 그러므로 자기게시물 일반을 개인정보로 보아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의 동의철회권, 개인정보보호법의 처리정지요구권은 최대 개인정보의 파기까지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배제, 검색배제 모두 위 권리의 행사범위에 포함된다.⁶⁾

3) 육소영, 디지털 소진론,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2, 9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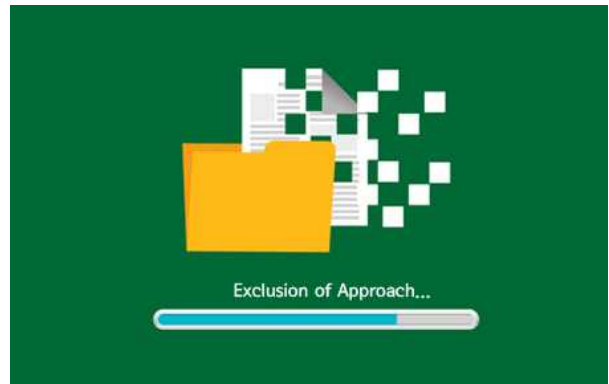
4) 인터넷 자기게시물은 유체물이 아니고 자기게시물의 게시판 업로드가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로 보는 것에도 이견이 있을 수 있어서 권리소진론을 적용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학설은 판매 뿐만 아니라 증여, 소유권의 포기의 경우에도 권리소진을 인정한다.

5)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이 자신의 공적 업무와 관련하여 게시한 게시물인 경우 혹은 공직자 및 언론기관 관계인 등이 게시한 게시물이 그 업무에 관한 것으로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경우

6)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3항,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 제4항은 동의철회권, 처리정지요구권이 행사되면 해당 개인정

제3자의 이의신청 절차 역시 법률에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사업자의 자율적 절차에 맡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위 가이드라인의 실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이는 접근배제요청의 거부사유(공익 관련성)는 보다 면밀한 검토를 요한다. 접근배제조치를 정보통신망법의 동의철회권, 개인정보보호법의 처리정지요구권의 행사로 본다면, 위 가이드라인이 예시한 접근배제요청 예외사유는 이들 법률의 규정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아니한다. 먼저 정보통신망법의 동의철회권은 그 권리행사의 제한이 없다. 이는 정보통신망법이 원칙적으로 이용자와 사업자간의 계약(즉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것을 예정하면서 정보주체인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계약해지권 즉 동의철회권의 행사에 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처리정지요구권의 경우에도 공익 관련성에 기하여 처리정지요구를 거절할 만한 사유가 마땅치 않다. 제2호 사유인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으나 가이드라인이 예시한 사례들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우리의 개인정보보호법제는 저작권법과 같은 다양한 공정이용 사유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여기에서도 드러난다. 가이드라인이 예시한 예외 경우들은 주로 표현의 자유, 알권리에 관한 것들이므로, EU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과 같이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표현의 자유 등의 공익적 사유를 정보삭제권(right to erasure)의 제한 사유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공익 관련성 기준에 따라 접근배제요청의 거부를 인정한다면, 접근배제조치의 이의신청자를 게시자임을 주장하는 제3자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공익적 관점에서 접근배제에 대해 이해관계를 갖는 자로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정치인이 공적 업무와 관련하여 게시한 게시물이 공익 관련성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접근배제된 경우 현재의 가이드라인은 해당 정치인 외에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해당 게시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공익적인 사안임을 주장하여 접근재개를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부분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이의신청인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보인다.

마지막으로, 가이드라인은 망인의 유족에게도 접근배제요청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이른바 디지털 유산의 문제이기도 한데, 개인정보는 우리 법상 재산권이 아닌 인격권의 일종으로 해석되고 있어서 유족에게 상속될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 페이스북이나 구글과 같은 외국 사업자의 경우를 보더라도 사업자의 정책에 따라 사업자마다 상이한 내용의 상속 관련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우리의 가이드라인에 있는 유족의 권리가 이들 외국

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에게도 인정될 수 있는지 문제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유산의 문제는 아직 확립된 이론이나 실무가 부족하므로 일단 사업자의 재량에 맡겨서 사례의 축적을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4. 결론

인터넷 자기게시물이 순수한 프라이버시 사항이라면 접근배제에 따른 큰 문제는 없을 것이나 실제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라고 하기 보다는 역사·문화의 일부로 평가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접근배제요청이 있을 우려가 있다. 이 경우 현재 가이드라인상의 예외 사유인 공익 관련성만으로는 적절한 해결이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위 가이드라인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EU 사법재판소 판결도 일반 인터넷 이용자가 정보접근권에 관한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와 이익형량을 하여야

한다고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위 가이드라인의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자체에 다양한 법익에 대한 이익형량의 요건이 규정될 필요가 있다. 이는 비단 접근배제권, 정보삭제권, 처리정지권의 행사에서만 고려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의 처리 전반에 대하여 일관되게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가입자정보가 없는 경우 본인확인에 관한 기술적 문제, 외국 사업자들과 역차별, 접근배제요청과 이의신청이 충돌할 경우 이를 판단하는 최종적인 절차의 부재 등의 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여야 정부가 제정한 가이드라인으로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아직 개인정보 처리정지, 삭제에 대한 실무와 이론이 완비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구체적인 사례의 축적을 통하여 접근배제절차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가이드라인을 계속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KISO JOURNAL

인터넷방송 플랫폼 서비스 규제방안에 대한 고찰 - 사업자·기업·BJ의 사회적 책무 등 현황 및 개선방안

강장목 / JM코드그룹 대표 · 고려대학교 교수

<Keyword>

인터넷 방송, BJ, 사회적 책임, 규제방안, 자율 규제, 표현의 자유

1. 초연결사회의 인터넷 방송

방송은 연결이다. 연결은 매개에 따라 라디오파를 이용하면 라디오, 공중파를 이용하면 방송, 인터넷을 이용하면 인터넷방송이 된다. 네트워크 사회에서 연결은 단순히 노드(node) 간의 링크(link)가 아니다. 연결의 강도와 정보력의 반증이다. 연결의 빈도는 곧 힘(광고수익, 여론 형성 등)이다.

20세기가 되자, 정보시스템은 전화선과 같이 중앙과 변방으로 구분 되었다. ‘중앙과 변방’은 단순한 네트워크 구성의 방식으로 시작해서 사회구성의 물적 토대로 고착되었다. 정보는 중앙에서 변방으로 향했고, 네트워크는 방사형(star network)이었다. 방사형 네트워크 구조는 사회 변방의 끝자리와 중앙 정부 간의 극명한 정보격차(정보의 비대칭)를 이루도록 하여 중앙 통제를 가능하게 했다. 20세기 정보력의 비대칭은 정권과 연결된 정보국, 방송국, 종이로 연결되는 신문, 옥외 광고 등 활자로 연결되는 사업자까지 조정할 수 있는

힘으로 작용했다. 정보는 중앙에서 재단하고 편집할 수 있는 불안한 대상이었기 때문에, 민주주의 체계는 권력과 언론의 관계를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그리고 ‘국가 안보와 체제 유지’ 등 긴장과 밀월 관계로 발전시켜왔다. 국가, 사회, 시장, 경제, 개인 등 단위 주체의 크고 작음을 떠나, 정보처리와 소통과정은 네트워크 구조의 물적 토대 위에서 합리성이라는 언명으로 장고의 진보를 거듭해왔던 것이다.

반면, 21세기 초연결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연결의 매개와 방식이 달라졌다. 방송망, 통신망, 사물망, 소셜 관계망 등 ‘망’자를 붙인 모든 연결이 인터넷으로 수렴했다. 망의 망인 인터넷에서는 망 자원의 희소성, 일대다·다대다·일대일 등 네트워크 구조에 따른 통제 방법의 상이함, 네트워크 구조가 갖는 위계성과 경로의존적 구조(허브 등 특정 경로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네트워크의 길목 등)에 따른 정보 이동의 속도와 방법, 그리고 경로 등이 천차만별이던 모든 망과 매체를 인터넷 속으로

‘통’쳤다. 이런 네트워크의 물적 토대가 변화하는 지점에서는 어김없이 ‘방통(방송·통신)융합/통방(통신·방송)융합’ 등 기존 매체 간의 알력이 존재했었다. 하지만 그 갈등이 조정되고 이해되기 전에 인터넷이라는 블랙홀로 세상 만물의 연결이 포함되어 갈등은 내재되고 증폭된 채 초연결사회로 진입했다.

새롭게 등장한 인터넷 기반의 연결사회는 전화망과 다른 네트워크 구조를 갖는다는 심각한 문제를 내포한다. 기존 매체가 갖던 특징 즉, 통신은 1:1 기반의 비밀 보장을 가치로 발전시켰고, 신문과 방송은 1:다 기반의 게이트키퍼를 통해 언론의 책무라는 가치를 연마해왔는데, 어느 날 두 가치체계가 충돌하고 인터넷이라는 한 지붕 아래에서 한솥밥을 먹게 된 것이다. 이것이 상상이나 할 수 있던 일인가? 방송의 영역에서, 통신 기술의 영역에서, 각각 발전해온 학문 영역에서 체계화된 교육을 받은 전문가는 오직 하나의 지식의 성을 쌓아왔다. 통신과 방송 등 각 전공 분야로 매몰된 전문가와 행정부처는 각자의 규범논리와 규제체제를 갈라파고스적으로 발전시켜왔다. 그러던 어느 날 방송과 통신의 만남이 태생한 부조리를 해결할 상상력을 키워낼 수 있을까?

이런 시대를 맞아, 저자에게 “인터넷방송 플랫폼 서비스 규제방안에 대한 고찰-사업자-기업·BJ의 사회적 책무 등 현황 및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는 한없이 낯설면서도 동시에 익숙함으로 물러터진 느낌이랄까. 이제부터 이 주제에 대해 사업자, BJ, 규제당국 등 입장에 따라 나뉘는 사고의 간극을 살펴보고 차분한 조응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2. 사업자의 사회적 책무와 현황

21세기 초연결사회의 인터넷 방송을 다루면서, 사업자에 대한 규범논리는 복잡하기만 하다. 우선, 활자체계의 규제 논리는 500년 전 개발된 인쇄술로 인터넷 방송을 회귀토록 하고 인터넷방송 규제논리를 19세기적 규범논리에 끼워 맞추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¹⁾ 방송망은 전화망처럼 중앙 관리(전화선을 중앙에서 연결해주고 끊어주듯이 방송 콘텐츠를 제작하는 소수를 조율하고 규제하는 방식)가 가능했던 규제 모델에서 자율규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율규제 방식은 성숙한 시민의식과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기업에 대한 신뢰 풍토에서 싹튼다. 이를 위해 정부규제에서 자율규제로 바뀐 우수 사례를 발굴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예를 들면, 저작권과 창작권의 침해문제로 몸살을 앓았던 ‘레진코믹스 사건’의 경우 성인물 콘텐츠에 대한 웹툰 규제를 자율규제로 바꾼 후,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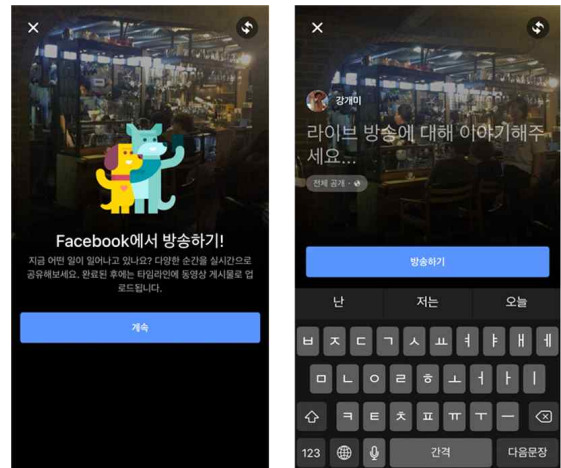
기술의 태동에 동물적인 감각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이기 바빴던 사업자에게는 사건사고도 끊이지 않는다. 따라서 사업자 역시 단순히 감시 및 통제 직원을 늘리는 방식보다는 시민의 자발적인 자정 노력을 이끌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이끄는 기술/제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더 자극적이고 보다 노출이 심해야 별풍선이 많이 나오고 수익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표현의 자유와 음란, 저작권과 저작권 사이의 지렛대를 집단지성으로 바로 세울 수 있는 내부 알고리즘이

1) Pia Mancini(2014). How to upgrade democracy for the Internet era.
Available : https://www.ted.com/talks/pia_mancini_how_to_upgrade_democracy_for_the_internet_era.

나 자정 시스템 개발도 필요하다. 미국의 유튜브는 자체 필터링 기술과 노출 방법(추천하는 동영상의 노출 순위와 빈도 등)을 통해 어느 정도 문제점을 개선해나가고 있다. 아프리카TV 역시 별풍선이라는 수익모델로 성장하였지만, 음란과 저작권 침해가 심한 방송의 경우 시청자가 별풍선을 꺾거나 ‘불법을 조장하는 멘트와 별풍선을 날리는 시청자’를 자율 규제 하는 자정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당장은 기업 입장에서 ‘시청자와 갈등을 유발하는 새로운 규제 시스템 개발’이 비용이라는 인식을 버려야 한다. 아마존은 이용자 간의 평판시스템 등을 개발하였고 이를 통해 단순히 플랫폼의 자정 기능만을 높인 것이 아니다. 이용자 간의 평판과 상호신뢰 시스템은 향후 정확도가 높은 상품추천 시스템과 선순환 플랫폼으로까지 발전하였다. 기업의 새로운 수익모델 발굴이나 새로운 사업 기술 획득은 오히려 자발적인 자정 기술과 방법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의 자율규제는 기업의 경쟁력으로 발전하게 된다.

최근 페이스북은 ‘라이브’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였으며, 한걸음 더 나아가 온라인 게임회사인 블리자드와 협업을 시작했다.²⁾ 이미 소셜게임으로 진화한 온라인 공간에서는 로그인을 페이스북으로 하고 게임에 대한 기록과 활동을 공유한다. 블리자드의 ‘워크래프트’ 등 전문 게이머는 페이스북을 통해 ‘게임 플레이’를 ‘라이브’로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다. 실시간 라이브는 페이지나 팬 또는 5천명에 가까운 친구를 가진 게이머의 네트워크



<그림 1> 페이스북 라이브

속에서 공유되고, ‘최고예요’ 등의 인터랙션이 첨가되며, 라이브 방송 전·후에는 동영상 광고로 수익을 극대화, 필요한 경우에는 게임방송 자체를 관계기반의 실시간 응원전으로 새롭게 재편할 수도 있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기존의 온라인 게임채널 방송사들은 어떻게 될까? 기존 온라인 방송으로 성장한 게이머, 게임 전문 MC, 관련 전문가들은 책임성 없이 자극적인 페이스북 라이브로 자신들의 수입만 줄었다고 관계당국을 비난할 수 있을까.

앞으로 페이스북 ‘라이브’로는 단순히 게임 방송만 유입되는 것이 아니다. YTN은 이미 페이스북으로 제보를 받고 있다.³⁾ 향후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유입된 1인 기자, 1인 리포터, 1인 영상 제보자, 1인 특파원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방송할 날도 멀지 않았다. 그렇다면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기사를 제작하는 방송기자는 자신이 작성한 기사와 평범한 시민의 기사가 보도국 편집국에 나란히 올라가 경쟁하는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

이처럼 창발적 기업의 승부수는 늘 허를 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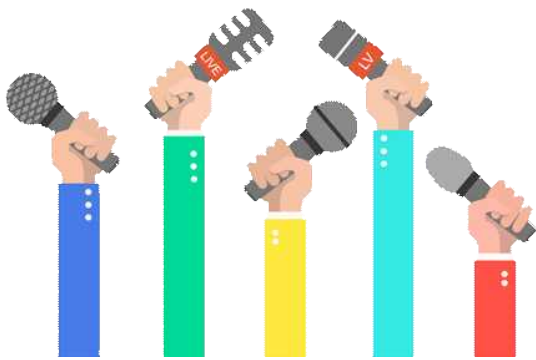
2) The Huffington Post(2016.06.14.). 인공지능의 시대 ‘사다리 건너차기’ Available : http://www.huffingtonpost.kr/sangsoon-kim/story_b_10449900.html.

3) 미디어 오늘(2016.06.12). YTN 페이스북 구독자 100배 늘어 30만명된 이유 Available :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0380>

르는데, 여기에는 ‘방송이나, 통신이나, 음란이나, 표현의 자유나’ 라는 규범이 정곡을 찌를 수밖에 없는 애매한 지점을 내포하고 있다. 규제와 규범의 잣대 자체가 19세기와 20세기적 시야에서 체계화된 반면, 이 낡은 옷을 애써 21세기 새로운 서비스에 끼워 맞추려는 조악함이 드러나고 있다.

초연결사회에서는 자율규제 역시 기업의 핵심 기술력이자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스냅챗의 경우 ‘잊힐 권리’를 가질 수 없는 이용자의 불편함을, 휘발성 기억으로 공유하게 하여 인기를 끌었다. 이처럼 자율규제를 통해 사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나라의 글로벌 사업이 등장하도록 하는 규제 당국의 길고 긴 눈이 필요하다.

3. BJ의 사회적 책무와 현황



초연결사회에서 연결은 사람의 혈관 속 세포와 핏줄의 연결까지도 인터넷으로 전송될 기세이다. 환자의 실핏줄을 따라 암세포를 잡는 신물질이 이동하며 실시간 이동경로를 모니터링해주는 시대를 살 것이기 때문이다. 실핏줄로 이동하는 치료과정을 환자가 자발적으로 방송하고 이를 통해 환자가 병원비를 마련한다면 ‘우리는 의료정보의 오남용과 환자의 애절한 사연 사이’에 누구의 편을 들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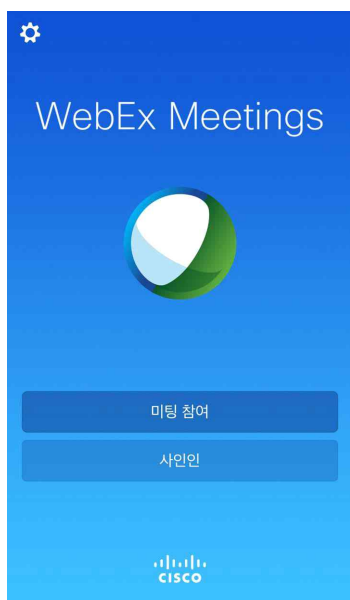
야 할까. 아직 풀리지 못한 사업자의 책임과 법적한계, 그리고 BJ의 규범적 언사와 활동에 대한 제재 논의가 시작도 되지 않았다. 그러나 신기술은 익숙하던 인터넷 환경을 생경스럽게 변화시키고 심지어 낯선 도전이 암초처럼 도처에 도사린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프리카TV’로 대표되는 인터넷 개인방송이 있다. 별풍선이라는 혁신적인 사업모델 등을 통해 OTT의 새로운 영역을 선보였다. 이곳에서는 ‘BJ(broadcasting jockey,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들의 일탈과 동시에 BJ를 관리하는 CJ 등의 연예기획사 등도 등장하였다. 상업화의 속도가 상당히 진전되었다. 신기술과 시장의 신속한 반응은 규제 당국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들에 대한 사전교육을 통해 자정 효과를 높인다는 주장도 있고, 별풍선을 많이 받는 사업모델 자체가 사람들을 끌어 모으려는 선정성을 필연적으로 갖는다는 주장도 있다.

신자본주의 시대에 인간의 선한 의지(will)에 맡길 수 없다는 것은 대기업 규제부터 BJ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인간의 나약함을 교육으로 해결하고 시민사회의 건전한 모니터링으로 헤쳐 나갈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사회인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선한 BJ 또는 자극적이지 않지만 시청자가 좋아할 BJ, 사회적 문제와 의제를 설정하는 다소 고리타분하지만 진지한 BJ 발굴 등 인터넷 방송 환경을 통한 사회 구성적 해결방안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BJ의 불법 행위는 엄벌에 처하는 관계당국의 엄격한 잣대(음란물, 아동 포르노, 자살과 폭력을 방조하거나 조장하는 행위 등)를 가져야 할 것이다.

4. 결어

저자는 초기 인터넷 방송의 효시인 윈앰프를 통해 라디오 스타를 꿈꾸었던 1인 방송가이다. 동시에 미국의 유튜브, 스냅챗, 페이스북 라이브, 유투립스, 트위치TV 등을 시청하는 애청가이다. 물론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인터넷 방송의 기본 포맷을 차용한 ‘마이 리틀 텔레비전’이라는 공중파 방송을 즐겨보고 있다. 최근에는 저자의 모든 특강을 유튜브에 올리고 있다. 저자가 가진 영상장비는 1만 원짜리 삼각대와 2년 할부 약정기간이 곧 종료되는 아이폰 6 플러스뿐이다. 강연장에 가서 삼각대 위에 ‘비행기모드’로 바꾼 스마트폰을 올려놓고 녹화버튼을 누른다. 저자의 영상은 큰 조회 수가 없다. 저자 역시 보다 자극적인 주제나 선정적인 방법을 찾거나 ‘아프리카TV에서 실시간 방송을 한 후 유튜브에 올려 광고 수익을 얻어볼까’란 생각을 하곤 한다.



<그림 2> WebEx Meetings의 모바일 첫 화면

때론 안정적인 화상회의를 돕는 시스코의 ‘WebEx Meetings’를 통해 회의를 저장하여 올리는 방식은 어떨지, 2016년 7월 맨해튼에 출장 간 김에 브루클린 브릿지나 타임스퀘어 또는 센트럴파크에서 노트북을 열어놓고 ‘초연결사회와 인터넷 방송’이라는 주제로 녹화를 하여 올리면 조회 수가 올라갈지 궁금해지는 1인 방송가이다. 이처럼 1인 방송가와 인터넷 방송 플랫폼 사업자는 수익모델과 콘텐츠를 위한 창의력을 발산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1인 방송을 규제하고자 하는 전문가와 행정당국도, 몇몇이라도 이런 노력을 체험해보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는 ‘인터넷 방송에 대한 규제논의’ 자체인 이 재미없고 딱딱한 내용을 어떻게 선정적이고 자극적으로 풀어볼지를 고심하면서, 국민적 지혜를 얻고자 아프리카TV나 새로운 방식의 공청회를 개최해볼 생각은 없는지 관계 공무원에게 조언해주고 싶다. 오늘날 환경은 누구도 학창시절(저자의 경우 학창시절에는 모뎀을 통해 인터넷을 하였기에 학과 수업에서 이런 환경 자체를 배워본 경험이 없다.)에 체계적으로 학습한 바 없다. 모두가 인터넷 방송 환경 앞에서는 일천한 경험을 가지고 객관적 조망을 하고자 애쓸 뿐이다. 따라서 직접 경험하면서 정책당국과 플랫폼 사업자의 고충을 이해해보는 체험시간도 유용할 것으로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과거 통상 뉴미디어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정부 당국과 사업자의 패턴을 잠시 기술하며 이 길을 건지 말기를 조언하고 싶다. 정부는 단기간에 안전한 콘텐츠 제작과 활용에 애쓴다는 홍보효과를 얻기 위해 공청회, 전문가 간담회, 가이드라인, 지침 등을 쏟아낸다. 대부분의 경우 그 종착점은 시청률 또는 시청자 몇 %이상의 사업자에게는 의무적으로 모니터링 요원을 수십 명 이상

두게 한다는 규범이었으며, 이를 통해 국민을 안심시키고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작태를 보여 왔다. 과거 미디어 다음과 네이버 등의 포털을 규제할 때 역시 비정규직 모니터링 요원의 채용을 통해 어느 정도 이 문제를 해결토록 했다. 사업자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그 결과 사업자는 경쟁적으로 필터링 기술을 개발하거나 신사업에 영감을 줄 평판 시스템을 글로벌 수준으로 정교화 하는 노력을 하지 않게 된다. 정부의 규제대로 모니터링 요원을 두거나 기술적으로 댓글을 달 때 실명제를 하도록 한다거나 하는 규제만 지키면, 어느 정도 기업이 져야할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근성을 솔뚜껍이라고 비아냥거리

곤 한다. 문제가 생기면 이를 깊이 있게 성찰하고 긴 안목에서 사업자와 시민의 발전을 도모하기 보단, 들끓는 비난을 면피하기 바쁘다. 그 결과 정부는 19세기적 규제를 제시하고 기업은 그 규제만 지키면 어느 정도 책임을 면피한다. 새로운 미디어가 문제의 심각성을 내뿜을 때 마다, 영혼 없는 공무원과 학석·박을 오로지 방송과 통신 한 영역에서만 바라본 매몰된 전문가, 그리고 여론의 들끓는 비난을 면피하기 바쁜 사업자 간의 양철 냄비보다 가벼운 규제 모델을 내놓는다.

21세기에는 규제도 창의적이어야 한다. 상상력이 없는 규제도 자율규범도 산업 전체를 망치는 울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KISO JOURNAL

회피연아 사건에서 통신자료 제공에 대한 재검토 (대법원 2016.3.10. 선고 2012다105482)¹⁾

손형섭 / 경성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Keyword〉

회피연아 사건, 통신자료 제공, 개인정보 제공, 전자영장 제도

1. 회피연아 사건

가.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10. 3. 4. 편집된 소위 회피연아 사진을 인터넷 카페에 ‘퍼옴’으로 게시했다. 이후 사진에 등장하는 소위1 장관은 다음날 이 사건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린 사람들에게 대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제기했다. 종로경찰서장은 같은 달 8일 피고(이하 네이버)에게 아래와 같이 원고 외 2명의 인적사항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이를 뒤 서울종로경찰서장에게 원고 외 2명의 ‘포털 ID, 이름, 주민번호, 이메일, 휴대폰 번호, 포털 가입일자’를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종로경찰서장은 원고를 소환하여 명예훼손 혐의를 조사하였

으나, 그 뒤 2010. 4. 28. 원고에 대한 고소가 취하되어 사건이 종결되었다.²⁾

나. 하급심 판결

이 사건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13 선고 2010가합72873 판결) 법원은 피고 네이버가 이용약관에서 개인정보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에게 수사관서의 개인정보 제공요청에 대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실체적 심사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 사건 제2심(서울고등법원 2012. 10. 18. 선고 2011나19012 판결) 법원에서는, ① 피고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에는 개인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원칙의 예외로 “법령의 규정에

1) 이 글은 拙稿, “인터넷이용자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법적 연구”, 공법연구 제 42권 2호 pp.151~181(2013. 10), 173~176면, 법률신문, 2016. 4. 7. 국민을 보호하는 기관은 어디 있나?, 로앤비 2016. 4. 6. 전자평석 “회피연아 사건에서 수사기관에 인터넷이용자 개인정보 제공”을 수정 증보하여 작성한 것임.
2) 한편 네이버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연간 수십만 건의 이용자 개인정보 제공요청을 받고 있으며, 통신비밀 전달기구로 이사 1명이 포함된 6명의 개인정보보호팀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으나, 이 통신자료 요청에 대하여 별도의 점검회의 등은 하지 않았다.

의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구 전기통신사업법을 근거로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기만 하면 언제나 예외 없이 이용자의 인적사항 일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여온 점, 수사기관의 ‘ID와 인적사항일체’에 대한 요청에 대하여 ‘이메일 주소’까지 제공한 점, ③ 이 사건 게시물이 공적 인물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기 어렵고 급박하게 개인정보를 제공해야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 등으로 원고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내지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이에 의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위자료 500,000원의 배상을 판결하였다.

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 제4항은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이 수사를 위하여 요청사유,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자료제공요청서로 통신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에 응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전기통신사업자가 개별 사안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 그 제공 여부 등을 실질적으로 심사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2항 등에 의해 수사기관에 제공됨으로 인한 사익의 침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기통신사업자로서는 수사기관이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어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할 경우 원칙적으로 이에 응하는 것이 타당하다."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에 의해 통신자료가 제공되어 해당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기본권 등이 침해되었다면 그 책임은 이

를 제공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아니라, 이를 요청하여 제공받은 국가나 해당 수사기관에 직접 추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즉, 대법원은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에 대한 통제는 국가나 해당 수사기관에 대하여 직접 이루어져야 함이 원칙"이라고 하면서 사인인 인터넷 포털사업자에게 통신자료 제공에 대한 심사의무를 부정하고, 현재 다수의견에서 임의규정으로 해석된 이 규정에 대하여, 포털사업자의 책임만 면책해 주고, 통신자료 제공으로 발생한 국민의 개인정보통제권의 침해에 대해서는 감수해야한다는 태도를 취하였다.

라.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이미 헌법재판소는 다수의견에서 이 법률조항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에 관한 통신자료를 수사관서의 장의 요청에 응하여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을 뿐이지 어떠한 의무도 부과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관서의 장의 요청이 있더라도 이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고, 이 경우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아니한다."(헌재 2012. 8. 23. 2010헌마439, 판례집 24-2상, 641)고 결정하며 이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판단한 바 있다.

2. 통신자료 제공의 방법

가. 개인정보 제공의 원칙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등이 규정하고 있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은 검찰 등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피의자 등 이용자의

통신일시 및 시간, 주고받은 통신번호, 인터넷 로그 기록, 위치추적자료 등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은 법원의 허가라는 사법적 통제를 거친다.

반면, 전기통신사업법의 통신자료 제공은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재량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³⁾ 필자는, 이 사건 고법 판결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제공의 동의를 받거나,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혹은 담당 팀에서 개인정보제공에 대한 타당성 점검회의 및 그 검토 사실에 대한 결과 유지하고 이용자에게 사전·사후 통지한다면, 민법 제390조에 의한 계약책임은 배제될 수 있고, 나아가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도 면책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이 과정에서 무분별한 통신자료 제공에 대한 제한이 이루어질 것이다.

2011년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동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의해 ①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②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③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④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이후부터 ISP가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위의 조건을 갖추었는지 검토하고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나. 개인정보자기통제권의 확보

오늘날 수사기관으로 통신정보의 과다제공 등으로 인한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리가 더욱 강하게 준수되어야⁴⁾한다. 통신자료 제공은 내사나 초동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하는데 효과적이지만 개인정보를 통제 없이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 국민들은 “내 허락이나 법원의 영장도 없이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왜 넘겨주느냐”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 등은 “자료제공 요구시 법원의 영장을 받도록 하거나 제공사실을 사후에 의무적으로 당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

3) 통신사실 확인자료와 통신자료의 법적 구분

근거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제공 범위	통신사실 확인자료(제13조 등)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시간, 발·착신번호, 접속자자료, 인터넷 로그기록, 기지국 위치 추적 정보	통신자료(제83조 등) 이용자 인적사항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해지일자
요청 기관	검사, 경찰, 정보수사기관장, 법원	검사, 수사기관장, 정보수사기관장, 법원
요청 절차	관할법원 및 지원의 허가	4급 이상 공무원(수사관서장) 결재
당사자에게 자료 제공받은 사실 통지 여부	공소 및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이 있을 후 30일 내 자료를 제공받은 사실 통지	해당 없음
위반시 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4) 이종필, “전기통신사업자의 수사기관으로의 통신정보 제공 시 문제점과 개선방향”, 헌법학연구 제18권 제1호, 270면.

다.”고 한다.⁵⁾

반면, 검찰에서는 “통신자료 제공”에 대하여 수사 보안이나 국가 안보를 위해 일정기간 동안은 통신자료 제공 사실을 본인에게조차 확인해 주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⁶⁾ 한 부장검사는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 피의자의 전화통화 내역목록 등 통신사실확인 자료를 확보하더라도 그 자료에는 피의자가 통화한 상대방의 전화번호 정도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피의자와 통화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 신속하게 파악해 수사를 진행하려면 통신자료 제공 요청을 통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관련 개인정보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이것마저 일일이 법원 영장을 받으라고 하면 사실상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⁷⁾라고 한다. 수사기관은 ‘수사의 밀행성 유지’를 위해서 일정기간 동안 통신자료 제공 사실을 당사자에게 모르게 하는 등 보안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헌법과 국민들의 입장에서, “수사의 편의”라는 가치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국가안정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의 하위 개념일 뿐이다. “수사의 편의”를 위해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통제권이 침해되어도 좋다고 하기 어렵다. 수사의 편리성을 이유로 해서 통신자료를 통제 없이 제공 받으려고 하는 수사 관행은 시정되어야 한다. 오히려 수사기관은 인터넷상의 권리 침해를 받은 국민을 위해, 침해자의 신원 확인을 위해 간편한 통신자료 제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쪽

이 더 설득력이 있었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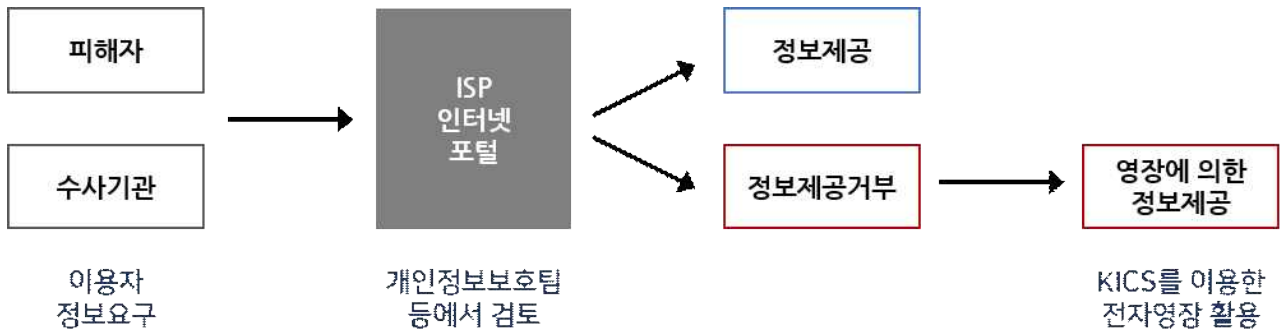
다. 외국의 예

해외 미국·독일·일본에서도 우리 수사기관의 주장과 같이, 법원 등의 통제 없이 통신정보 등을 이용하여 수사의 편의성을 도모하지 못하면 사회 안전이 위협된다는 논의는 주류가 아니다.

미국에서는 법집행기관이 구하는 정보가 커뮤니케이션의 ‘내용(content)’인가 아니면 ‘비내용(non-content)’인가에 따라 헌법적 보호가 달라진다. 즉 법원은 커뮤니케이션의 내용에 해당하는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에 법집행기관에 접근하는 것인 영장(warrant)이 요구되는 수색에 해당한다. 반면, 이메일의 송수신 주소나 IP주소와 같이 비내용적 성격의 정보에 접근하는 경우는 보다 완화된 접근이 허용된다.⁸⁾ 그러나 이것도 익명의 피고인들의 신원을 요구하는 경우 제출명령영장(subpoena)을 심사하여 그 신청이 정당하고, 당해 신원정보가 사건 판단에 핵심적이어야 한다.⁹⁾ 최근 제정된 ‘The USA FREEDOM ACT of 2015’에서 연속적 기록의 수집에 대해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기도 했다.¹⁰⁾

독일 TKG 제113조 제5항에서는 10만 명 이상의 이용자를 가진 포털은 자기부담으로 예방 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관련 정보의 제공 거부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해당전문가에 의해 제공요건의 심사의무를 명시하고 있다.¹¹⁾ 일본은 인터넷 게시판의 명예훼손 피해자는

5) 법률신문(2016.4.4.), ‘통신자료 제공’ 논란 속 당사자에 통지 싸고 ‘갑론을박’, 6면.
6) 법률신문(2016.4.4.), ‘통신자료 제공’ 논란 속 당사자에 통지 싸고 ‘갑론을박’, 6면.
7) 법률신문(2016.4.4.), ‘통신자료 제공’ 논란 속 당사자에 통지 싸고 ‘갑론을박’, 6면.
8) 이인호 외4명,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기본권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연구 제25권, 2014, 103면~104면.
9) 이인호 외4명, 위의 책, 169면.
10) 최창수, “수사·정보기관의 통신이용 정보수집권에 관한 미국의 입법례와 그 함의” 정보법학, 제20권 제1호, 2016. 114면~140면.
11) 임규철, 앞의 논문, 504면.



<그림 1> 전자영장 등을 이용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의 절차

ISP에게 게재자 정보를 조회요구하거나 경찰의 임의수사를 할 수 있다. 그 정보를 강제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판결을 통하여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거나 수사기관은 영장에 의해 수사가 가능하다.

3. 입법적 개선 방향 (전자영장 제도를 통한 제도정비)

이동통신사들은 여전히 통신자료 제공에 응하고 있고 2014년 통신사는 검찰과 경찰 국정원에 국회의원과 노동단체 실무자, 기자, 대학생 등 일반 시민의 1,274만개(전화번호수 기준)의 개인정보를 제공했고(미래부 집계), 수사기관 스스로의 검열한 것을 포함하면 더 많은 국민의 통신자료를 검열한 것이 된다. 앞으로 통신사업자는 통신자료 제공 여부에 대한 이용자의 문의에 답을 할 책임도 없게 되었다. 국민은 자신의 통신자료가 언제 어떻게 수사기관의 검토를 받았는지도 모르게 되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6조에 통신자료제공 현황을 연 2회 미래부 장관에 보고하여 점검받는 것이 전부가 된다.

이 사건이 2010년에 발생 이후 대법원 판결

까지 6년이 걸렸다. 그 사이 2011년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되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본인의 동의나 법에 의한 근거를 요구한다. 여기서 법에 의한 제공에는 영장에 의한 정보 제공을 포함한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영장제도를 통한 정보제공에 대하여 그 신속성과 효율성에 의문이라고 하며 전기통신사업법에서의 통신자료 제공을 간편하게 활용할 것이다. 수사기관이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고 포털사업자로부터 제한없이 제공받아도, 본인에 통지도 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러한 수사관행에 대하여 다시 적절한 통제 수단을 입법적·사법적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 앞에 놓이게 되었다.

문제가 발생하면 그 해결을 위해서 우리는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필자는 입법론적인 해결 방안으로 다음 그림과 같은 전자영장 제도 도입을 제안해 왔다.¹²⁾

국민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통신자료 제공이 필요하다면 이도 영장주의의 근간에서 해결해야지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을 통하여 이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 형사사법포털망(KICS) 등을 이용한 전자영장 제도 도입을 통하여, 통신정보 제공에 법원의 통제를 받으면서도 수사의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

12) 손형섭, “인터넷이용자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법적 연구”, 공법연구 제 42권 2호(2013. 10), 173~176면 참조.

는 제도를 제안한다. 이미 사법절차에서 전자 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서류제출제도가 도입되었다. 인터넷상 명예훼손 등의 피해자를 위해

서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통신자료를 전자영장을 통하여 확인하는 시스템을 상정하고 이를 위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KISO JOURNAL}



인공지능을 둘러싼 법의 관심과 그 지향점에 관한 일고(一考) - 미국의 인공지능과 법에 관한 논의 동향을 중심으로

윤혜선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Keyword〉

인공지능, 2016 미국 백악관 인공지능 공동 워크숍, 규제, 윤리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날로 고조되고 있다. 세간에서 논의되는 인공지능의 개념은, 인간 수준의 지능을 모사할 수 있는 기계 기반의 지능을 만들어내려는 공학적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19세기 “컴퓨터의 아버지”라 불리는 찰스 배비지가 계산을 기계화하는 방법을 개발한 것을 계기로 그 가능성이 논의되기 시작하여, 20세기 앨런 튜링을 비롯한 천재적인 수학자들이 계산이론의 기초를 세우면서 보다 구체화된 인공지능 연구가 1955년 이래로 낙관적 전망과 실망을 반복하며 지속되어 왔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진 바와 같다. 1990년대 등장한 MRI, CT, PET 등과 같은 뇌 스캔 기술은 최근 비약적으로 발전한 ICT 기술, 컴퓨팅 기술, 데이터 저장 및 처리 기술, 심층 학습(deep learning), 기계 학습(machine learning) 기술과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사그라진 인공지능의 불씨에 다시 한 번 희망의 바람을 불어넣었다. 그리고 2014년 6월 한 인공지능 대회에서 대화형 인공지능 로봇인 채터봇(chatterbot)이 튜링 테스트

를 통과했다는 발표에 이어 2016년 봄, 구글의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대국의 결과는 인공지능의 위력과 실용화의 가능성을 전세계적으로 확인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와 같은 기술적 진전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최근까지 인공지능에 대한 실정법적 관심을 크게 기울이지 않았다. 사회적으로도 엘론 머스크, 스티브 호킹, 빌 게이츠와 같은 거물급 인사들이 제기한 강한 인공지능(예를 들어 공상과학영화에 등장하는 로봇과 같은)이 인류의 실존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 관심이 쏠리는 형국이다. 그리하여 일각에서는 실현가능성이 없는 또는 적어도 가까운 장래에 실현되기 어려운 인류 생존의 문제(existential risk)에 대한 과도한 관심이 약한 인공지능(구글의 알파고, IBM의 왓슨, 애플의 시리 등)이 우리 사회에 제기하는 실질적인 이슈들에 대한 법적·정책적 논의를 방해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로 2016년 상반기 기준으로는 미국에서는 아직 강약을 불문하고

인공지능 일반을 직접 다루거나 규율하는 법률이나 입법안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드론, 자율주행자동차, 의료 소프트웨어(예를 들어 암 진단분석시스템) 등 약한 인공지능을 이용한 특정 장치나 기기에 관한 규제입법이 이루어졌거나 검토되고 있을 뿐이다. 물론 현행 전자상거래법이나 기술 중립적인 저작권법, 데이터에 관한 법률 등이 인공지능에 적용될 수 있다. 인공지능 규제정책이나 법제 마련 등에 대한 미국 정부의 소극적 태도는 최근 법률, 공학, 철학 전문가로 구성된 컨소시엄의 로봇법(RoboLaw) 프로젝트 결과보고서(D6.2 Guidelines on Regulating Robotics)를 검토한 유럽연합의 정책입안자들과 상당한 온도차를 보인다. 이 보고서에는 로봇 및 인간의 역량을 강화하는 신기술의 사회적 도입을 관리하는 방법에 관한 권고사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와 같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해당 연구진은 로봇공학에 대한 규제, 윤리의 역할, 법적 책임소재, 로봇에 대한 법인격 부여 문제 등 다양한 이슈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다. 앞으로 유럽연합은 이 보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법제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미국에서는 산업, 학계 등 민간의 인공지능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현재 편만하게 적용되고 있는 약한 인공지능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 강한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우려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인공지능 연구개발이 법적 공백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한 이들은 정부와 의회를 향해 현존하는 약한 인공지능 기술에 관한 규제체계의 정립, 데이터 규제(특히, 기업의 데이터 수집, 처리 및 이용행위 규제), 사고발생시 책

임소재, 인공지능 전체에 대한 규제 패러다임 형성 등의 도전적 과제를, 미래에 이 기술이 빠르게 확장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조속히 다루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또한 이들은 인공지능 기술의 이용방식에 관해 공론화를 추진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인공지능 관련 의사결정에 과학자들을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약한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미국의 민간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시급한 이슈들은 무엇인가. 크게 네 가지로 정리된다. 빅데이터 관리 문제,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 인간의 기계의존성 문제 그리고 일자리 문제. 이미 백악관에서 다루기 시작한 빅데이터 문제는 생략하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나머지 세 가지 이슈가 제기하는 문제점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현재 인공지능 혁신의 중심에는 심층 학습 기술이 있다. 인간의 뇌의 작동방식에서 영감을 받은 이 기술은 컴퓨터 비전(vision), 대화 인식(speech recognition), 자연어 처리 등에 있어서 상당한 진전을 이끌어 냈다. 이 요소들을 활용하면 검색엔진, 가상지원, 지능형 로봇 등 “개인 맞춤형”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이러한 인공지능 기반기술은 개인의 행위, 감정, 욕구 등을 분석할 수 있는 기능, 즉 프로파일링 기능을 고도화하고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미국의 전문가들은 바로 이 부분을 우려한다. 이 기술을 사용하는 기업들이 사람의 행위를 예측하는데 더욱 능숙해질 것이고, 예측이 가능한 사람은 쉽게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기계 학습 기술은 데이터를 탐색해서 사람의 행위를 “예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준에서 사람을 “이해”할 수도 있다. 이것이

정부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규제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이다.

또한 앞으로 사회는 점점 더 인공지능 기술이 탑재된 기계나 시스템에 의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이러한 기계의존성은 사회적으로 매우 치명적일 수 있다는 데에 많은 이들이 동의하는 분위기이다.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의사결정이 더욱 더 인공지능에 의존하여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한 의사결정들은 그 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기술에 대한 이해 없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한 효율성을 추구하는 사회적 경향은 기계나 시스템에 ‘일반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맡기려는 경향을 강화시킬 것이다. 이미 신용도평가, 대출승인 여부, 고용여부, 질병의 판별 및 치료방식, 입국허가여부 등 개인의 삶에 중요한 결정들이 인공지능에 기대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에 의한 자동화, 세계화로 인해 이미 다수의 미숙련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대체되었으며, 변호사, 의사와 같은 전문 직역도 그 영향권의 범위에 포함되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유럽연합의 로봇법 프로젝트 코디네이터였던 에리카 팔메리니 교수는 일자리 문제가 로봇시장 발전에 가장 큰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자동화의 가속화로 인해 2050년에 이르면 전 세계 인구의 반 또는 그 이상이 일자리를 잃게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상기의 이유로 미국의 인공지능 전문가들은 정부가 인공지능에 의해 변화된 일반 시민의 삶과 이러한 변화를 다루기 위한 입법의 필요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속적으

로 주장하여 왔지만, 미행정부나 연방의회는 인공지능에 대하여 최근까지 이렇다 할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실리콘 밸리의 주요 기업들과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법적 공백을 매우기 위해 싱크 탱크(think tank)를 설립하고 학계와의 연계를 통해 인공지능의 특정 위험만이 아니라 시급한 법적 이슈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구글은 Deep Mind의 반복적인 요청에 따라 신기술을 검토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였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스탠포드 대학의 ‘인공지능에 관한 100년 연구 프로젝트(One Hundred Year Study on Artificial Intelligence)’에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며, 자동화, 국가안보, 심리, 윤리, 법, 프라이버시, 민주주의 및 그 밖의 사회적 이슈를 검토하는 패널 구성에도 참여하고 있다. 보스톤에 위치한 Future of Life Institute(FLI)은 인공지능의 잠재적인 위험성과 편익에 관한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2014년 3월 출범한 기구이다. FLI는 2015년 1월 인공지능의 미래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연구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컨퍼런스(The Future of AI: Opportunities and Challenges)를 개최하였다. 세계적으로 알려진 산업과 학계의 인공지능 전문가들과 법학, 경제학, 윤리학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인 이 컨퍼런스에서 학회 참가자들은 기술의 오용을 예방하기 위해 보다 안전한 장치를 사용하고 신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더욱 더 주의를 기울이기로 합의하였다. 이 학회 이후, 엘론 머스크, 스티브 호킹, 모르간 프리만, 알랜 알다는 FLI의 과학자문위원회의 위원직을 맡게 되었고, 인공지능을 “인류에 혜택”을 제공하는 기술로 유지시키기 위한(to keep AI “beneficial to humanity”) 글로벌 연구 프로그램의 재정지원을 위해 천만 불을 FLI에 기부하

였다. 스탠포드 대학의 프로그램과 FLI는 인공지능의 미래와 위험에 관심을 갖는 수많은 국내외 싱크 탱크 및 협회들과 연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FLI는 강한 인공지능의 개발과 관련된 안전문제를 연구하는 UC 버클리 대학의 Machine Intelligence Research Institute과도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민간영역에서 자발적으로 인공지능의 안전 패러다임에 대한 논의를 형성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정부의 참여를 직간접적으로 촉구해 왔다.

지난 5월 3일 미국 백악관 블로그에 “인공지능의 미래를 준비합니다(Preparing for the Future of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은 이 글에서 학계, 비영리기구, 국가경제회의(National Economy Council)와 함께 인공지능에 관한 공론의 장을 워크숍 형식으로 연내 네 차례 마련하여 인공지능, 특히 기계 학습 기술이 제공하는 기회와 도전을 검토하겠다는 계획과 그 일정을 밝혔다. 최근 오바마 행정부는 백악관에 인공지능 이슈들을 다루기 위해 “기계학습과 인공지능 소위원회(Subcommittee on Machine Learning and Artificial Intelligence)”를 신설하였다. 이 소위원회는 인공지능 개발의 진보와 성과를 모니터링 하여 국가과학기술회의(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첫 번째 미션으로 변형적 기술(transformative technology)인 인공지능이 일자리, 경제, 안전 및 규제에 미치는 영향을 일련의 워크숍에서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그 내용을 올해 말 보고서로 발간할 예정이다. 지난 5월 24일 시애틀에 위치한 워싱턴대학교에서 “인공지능의 법적·거버넌스적 함의(Legal and Governance Implications of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주제

로 1차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이어서 지난 6월 7일에는 워싱턴 D.C.에서 “사회적 선(善)을 위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for Social Good)”이 논의되었다. 6월 28일에는 피츠버그에서 “인공지능의 안전과 통제(Safety and Control for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주제로 토론하고, 마지막으로 7월 7일에는 뉴욕에서 “근접한 미래에 대한 인공지능기술의 사회적 경제적 함의(The Social and Economic Implications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ies in the Near-Term)”를 차례로 논의할 예정이다.

인공지능에 관한 법적·규제정책적 이슈들을 다룬 첫 번째 워크숍에서는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강한 인공지능의 위험성보다는 약한 인공지능이 야기하는 문제들에 집중해야 하고, 정부의 역할이 요구된다는 데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의견을 같이하였으나 그 역할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정책 방향(이를 테면 구글의 자율주행자동차가 언제 어떻게 미국의 고속도로를 달리게 될지, 편견이 알고리즘에 스며드는 것을 어떻게 검토할 것인지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지는 못했다.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할 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한 정신적 모델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구체적 개별적인 정책적 법적 과제로 일자리 축소 문제, 프라이버시, 데이터 관리, 국가의 개입방식, 도덕과 윤리 문제, 책임 등이 논의되었다. 이 가운데 두어 가지에 대해서만 언급하면, 규제의 문제에 대하여는 인공지능 기술은 아직 개발 중이므로 선부른 정부의 개입은 더 안전하고 책임 있는 기계를 개발하는데 방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개발자에게 공공의 안전을 책임지우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이러한 인식을 공유하여서인지 미국 정부는

이미 상용중인 인공지능 -드론, 암 진단분석 시스템- 에 대한 규제·감독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도 여러 행정부처와 협력하여 증거에 기반한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일자리 축소, 윤리와 도덕의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일자리가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의해 대체된다면, 그러한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종류의 프로페셔널리즘(윤리기준)이 요구될 것이며, 그들은 그들의 직역에서 도덕적 부분을 인식하도록 훈련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제시되었다.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의한 차별(알고리즘의 편견)의 문제(예, 남성보다 여성에게 고소득 취업광고를 더 많이 전달하는 광고 프로그램, 흑인이 백인보다 상습범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평가하는 소프트웨어) 역시 프로그램 이면에 있는 사람이 윤리와 책임에 대해 보다 주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미 미국의 컴퓨터 전문가들은 공정성, 책임성, 투명성, 적법절차의 원칙들과 고된 씨름을 시작하였다고 한다.

미국 정부는 이 워크숍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똑똑해지는 상황에서 그것을 안전하고, 통제가능하며, 예측가능하도록 유지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정책적 도전과제라는 점을 확인하였을 것이다. 인공지능의 현실적인 문제는 지능적인 기계가 인류를 지배할지 여부가 아니라 인간이 인공지능 기술을 타인을 지배하거나 억압하는 데 오용할 것인가이다. 적어도 현재와 근접한 미래에서 인공지능 자체는 큰 문제는 아닐 것이다. 현재의 인공지능 기술은 우리를 더 똑똑하게 만드는 한 방식에 불과하고, 더 많은 것을 더 빨리 알게 하는 수단에 불과하며, 우리의 문화와 가치의 확장을 돕는 도구

에 불과할 뿐이다. 따라서 인공지능의 문제와 그에 대한 해결책은 “우리”이다. 따라서 인공지능이 초래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현실적인 위험과 문제에 대한 법적 관심과 지향점은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기술을 다루면서 윤리와 도덕을 논하는 이유는 획기적인 법적 수단이 등장하기 전까지 모든 종류의 현실적인 위험과 문제로부터 일반 국민이 더 잘 보호될 수 있는 방식이 구식의, 기술적이지 않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를 일컫는 윤리와 “사회 구성원들이 양심, 사회적 여론, 관습 따위에 비추어 스스로 마땅히 지켜야 할 행동 준칙이나 규범의 총체”라고 정의되는 도덕이기 때문일 것이다.KISO JOURNAL

〈 참고문헌 〉

보크 페리스(2015), 인공지능에 대한 낙관적 전망, 『스캐틱 코리아』, Vol. 3, 154-179.

스티브 해리스(2015), 실현 가능한 궁극의 기술: 나노테크놀로지, 특이점, 그리고 인공지능 『스캐틱 코리아』, Vol. 3, 90-121.

피터 카산(2015), 인공지능이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스캐틱 코리아』, Vol. 3, 122-153.

Ariel Conn(2016), The White House Considers the Future of AI, Available: <http://goo.gl/xqmk0C>

April Glaser(2016), The White House is Finally Prepping for an AI-Powered Future, Available: <http://goo.gl/sM8Tzr>

Agnes Smith(2015), Artificial Intelligence, Available: <http://goo.gl/lurPtv>

RoboLaw(2014), 『D6.2 'Guidelines on Regulating Robotics』.

The White House(2014), 『Big Data: Seizing Opportunities, Preserving Values』.

The White House(2015), 『Big Data: Seizing Opportunities, Preserving Values Interim Progress Report』.

The White House(2016), 『Big Data: A Report on

Algorithmic Systems, Opportunity, and Civil Rights』.

The White House(2016), Preparing for the Future of Artificial Intelligence, White House Blog, Available: <https://goo.gl/STBrDY>



유럽연합(EU)의 로봇법(RoboLaw) 프로젝트

이원태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KISO저널 편집위원

<Keyword>

로봇규제, 로봇법, 로봇윤리, 유럽연합, 인공지능

최근 인공지능과 로봇이 새로운 시장 창출과 국가경쟁력 향상의 원동력으로 간주되면서 이를 둘러싼 각국의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지고 있다. 미국 정부는 2013년 ‘첨단제조 파트너십’ 발표 이래 산업로봇(Co-Robot) 중심의 제조업 혁신전략을 실행해오고 있고, 일본 정부도 총리실 산하에 ‘로봇혁명실현회의’를 출범시키는 등 경제성장전략의 핵심으로 이른바 ‘로봇혁명’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은 제조, 농업, 헬스, 교통, 사회안전 등 타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세계 로봇시장의 선점, 강화를 위해 세계 최대 규모의 민간주도 로봇연구 프로그램(SPARC)을 운영해오고 있다.

특히 유럽의 경우 로봇의 산업진흥적 가치에만 주목하기 보다는 로봇 신기술의 사회적 영향을 고려한 합리적 규제 틀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정보화 연구개발 프로그램 즉 FP7(7th Framework Programme)의 재정지원 계획에 따라 로봇규제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이른바 ‘로

봇법 프로젝트(RoboLaw Project)’를 추진했는데, 로봇 관련 법규 및 규제대응을 위한 일련의 정책연구(2012. 3~2014.3)를 통해 ‘로봇규제 가이드라인(Guidelines on Regulating Robotics)’을 도출한 것으로 유명해졌다.

실제로 유럽연합의 로봇법 프로젝트는 로봇 기술의 윤리적, 법률적 이슈 검토를 통해 새로운 규범 체계를 정립하고자 하는 연구 목표하에 이탈리아, 네덜란드, 영국, 독일 등 4개국 4개 연구소가 참여했고 특히 자율주행자동차, 수술로봇, 로봇인공기관, 돌봄로봇 등 4가지 로봇기술의 윤리적, 법률적 분석을 통해 로봇 규제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유럽연합의 로봇법 및 로봇규제 가이드라인에 나타난 주요한 내용 및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규제 일반론을 제시한다기 보다는 구체적인 사례 중심의 기능주의적 접근법에 입각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로봇법 프로젝트의 주요한 연구대상은 자율주행자동차, 수술로봇(computer-integrated surgical system), 로봇 인공기관(Prosthesis), 돌봄로봇(care robot) 등 4가지로

선정했는데, 그 이유는 그 사회적 확산성과 중요성이 크기 때문인 것도 있지만 로봇기술의 응용형태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포괄적 정의(all-encompassing definition)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EU의 로봇법은 로봇의 일반적 정의에 입각해서 로봇윤리 또는 로봇법칙을 구상하기 위해 아시모프의 로봇 3법칙을 대체하거나 그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가 아니다. 새로운 입법 및 규제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식의 거시적 접근이라기보다는 로봇의 기술적, 윤리적, 사회적, 법적 함의를 잘 드러내는 몇 가지의 구체적이고 특징적인 기술이나 서비스를 중심으로 case-by-case의 개별 사례 분석을 통해 로봇 규제 이슈에 기능적으로 개입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로봇기술의 산업적 진흥도 중요하지만 투명한 규제 환경이 오히려 로봇 시장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정책철학이다. 지나치고 선부른 규제가 기술 혁신을 저해할 수도 있지만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해 당사자들의 혼란을 초래하는 등 혁신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향에서 관련 법률들을 검토하여 현행 법률로서 로봇 규제가 가능한지, 아니면 별도의 새로운 법제가 필요한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현행 법률상의 규제 공백이 있는지를 검토하면서 고려하는 로봇의 규범적 이슈들로는 1)건강·안전·소비자·환경, 2)법적 책임(liability), 3)지적재산권, 4)프라이버시와 데이터 보호, 5)계약주체로서의 법적 거래 능력(즉 로봇의 법적 인격 부여 문제) 등이 있다.

셋째, ‘책임 있는 연구와 혁신(Responsible Research and Innovation)’을 지향하면서, 윤리적 이해뿐만 아니라 법률적 판단과 개입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견인하는 학제적 접근에 입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수술로봇과 관련

된 정책 수립 과정에는 의료인, 법조인, 윤리학자, 엔지니어, 환자단체 등 다양한 관점의 개입이 필요하며, 윤리위원회 등과 같은 거버넌스를 통해 윤리적, 법적, 기술적인 이슈들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수술로봇의 경우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일부 특정계층만이 접근 가능한 배제적 측면이 있으므로, 누구나 로봇수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회의 평등, 윤리적 정의, 삶의 질 향상 등의 가치관이 적극 개입되어야 한다고 본다.

넷째, 로봇규제 또한 법제도적 규제뿐만 아니라 기술적 규제를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기술을 규제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규제의 주체로 상정한다는 것이다. 즉 기술규제(techno-regulation), 법으로서의 코드(code as law), 규범적 기술(normative technology) 등의 개념들과 같이 로봇의 합리적 규제 원칙을 기술적 프레임워크 또는 아키텍처 차원의 규제 전환할 수 있다고 본다. 로봇의 개발과 생산에 대한 법적 규제도 중요하게 고려하지만, EU 데이터 보호정책의 핵심 원칙인 “privacy by design”에 입각해서 로봇에 대한 기술적 규제를 지향하는 것이다. 물론 규제가 기술발전의 속도를 쫓아가지 못하고 기술규제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기술혁신의 가치가 내재된 연성법(soft law)이 적절한 대안으로 제시되지만, 기존의 경성법 체계 및 규제 거버넌스와 상충하는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는 혁신과정(innovation process)에 사회적, 윤리적 가치를 내장하는 기술규제, 즉 가치중심 디자인(value-sensitive design)이 더 유용할 수 있다고 본다.

다섯째, 인권, 행복추구권 등과 같은 기본권을 보호하고 지향하는 로봇법 및 로봇규제의 대원칙을 제시한다는 점이다. 로봇기술이 인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평등, 연대, 정의

등의 핵심 가치를 명료하게 천명하고, 더 나아가 유전학, 인지과학 등 다양한 인간 향상(Human Enhancement) 기술과 접목하여 로봇이 인간의 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역량접근법(Capability Approach)을 표방하는 것이다. 즉 로봇이 인간 고유의 역량을 상실, 약화시키지 않도록 고려해야 하고, 신체기능 회복을 넘어 평균 이상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인간 향상 기술과 관련된 규제는 공적으로 충분히 논의되어야 하고 초국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끝으로, 유럽연합의 로봇규제 가이드라인은 로봇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법적 책임 원칙도 적극 논의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로봇 기술의 복잡성 및 자율성 증가로 인해 인간의 통제력 감소뿐만 아니라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지고 있기 때문에, 개발자(설계자), 제조사(생산자), 소유자, 사용자 등 주체 간 법적 책임 배분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설계자가 예측하지 못한 로봇의 창발적 행위 특성(emergent behaviour)으로 인해 전통적인 법적 책임 원칙이 더 이상 유효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더구나 로봇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고려해서 로봇의 법적 인격성까지 부여할 경우 법적 권한과 책임 설정은 더욱 어려워진다. 실제로 현행 법 체계 하에서 로봇은 타인에게 행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현 단계에서 로봇 제조사는 로봇 생산 능력에 비해 법적 책임을 다룰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지나치게 엄격한 법적 책임 규정은 로봇 기술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로봇 기술이 충분히 발전되어 로봇 제조사가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을 때까지는 법적 책임을 제한하여 혁신을 장려하고 기술 혁신 과정에 윤리적 규제 프레임워크를 적용하는 노력부터 전개할 필요가 있다. 즉 로봇에

대한 법적 책임(liability) 관련 규정은 위험 규제와 혁신 진흥이라는 상충된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에서도 논의했듯이 유럽연합의 로봇법 프로젝트는 급부상하는 로봇기술의 영향력에 대한 유럽 차원의 공식적 법제도 대응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EU의 로봇법 및 로봇규제 가이드라인은 경성법, 연성법 등 전형적인 법규 형태의 체계를 갖추었다기 보다는 로봇의 윤리적, 법적 고려사항들을 정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로봇윤리론과 로봇규제론이 혼재되어 있으며, 이는 로봇의 자율성과 주체성에 인간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부여할 것인지의 법철학적 논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최근 우리나라도 알파고의 충격 이후 로봇과 인공지능의 윤리적 이슈와 법제도적 이슈가 혼재된 복잡한 논의구조를 보이고 있다. 특히 로봇윤리론의 경우 로봇의 윤리적 프로그래밍, 즉 로봇이 수행해야 할 도덕적 규약을 마련하거나 더 나아가 로봇을 도덕적 행위자로 간주하고 로봇 스스로 학습을 통해 윤리적 추론 및 책임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까지 다양하고 논의되었다. 물론 이같은 로봇윤리론의 장점은 인공지능과 로봇의 법적 책임이나 권리 등 그것의 규범적 가치를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준다는 점에 있다. 로봇윤리는 인간행위자 중심의 현행 법체계가 지닌 한계점을 드러내고 로봇, 기계 등과 같은 비인간 행위자를 고려한 새로운 규범 패러다임을 성찰적으로 모색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로봇윤리 담론은 로봇이 스스로 지능을 갖고 행동하는 존재로 전제하고 로봇이 지켜야 할 윤리적 규칙을 제안하는 견해, 로봇을 만들거나 사용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윤리적 책임의식을 강조하는 견해 등이 혼재되어 다층적인 논의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로봇윤리는 인공지능이나 로봇 신기술의 사회적 수용과정에서 규범적 논의 단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담론이지만, 실제로 로봇 개발자나 사용자들의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는데 많은 시간이 요구되고 로봇에 인간과 동등한 윤리의식을 이식하는 자체도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다. 또한 윤리적 실험이라는 대응만으로는 로봇과 인공지능의 파급효과를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 법제도적 규제 프레임워크를 모색하는 논의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국 워싱턴대 법학교수 라이언 칼로(Ryan Calo)도 로봇기술의 발전이 기존 법률과 규범체계의 혼란을 초래하므로 인공지능이나 로봇을 규제할 새로운 입법정책이 요구되며 더 나아가 이 문제를 다룰 소위 ‘연방로봇위원회(FRC: Federal Robotics Commission)’와 같은 거버넌스 구성을 주장한 바 있다. 유럽연합의 로봇법 프로젝트가 로봇을 규율할 거버넌스 구성까지 고려한 것은 아니지만, 로봇을 비롯한 지능정보기술에 대한 입법 및 규제정책의 근거가 될 만한 요소들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로봇의 개발자와 생산자, 로봇 사용자에 대한 행위 규제뿐만 아니라 로봇 알고리즘 자체의 기술적 규제까지 망라해서 논의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만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 간의 이

익상충이나 갈등을 뛰어넘고 로봇의 합리적 규제를 포함한 새로운 법규범을 기술적 프레임워크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지 여부는 각국의 규범 역량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로봇 등 지능정보 기술 및 서비스를 기존 법, 규제 틀을 적용할 사항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지속적 기술개발이나 새로운 산업화 진흥(규제완화)을 포함한 새로운 법제도 및 규제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지 등의 본격적인 고민이 시작된 것이다.^{KISO JOURNAL}

RoboLaw

Regulating Emerging Robotic Technologies in Europe. Robotics Facing Law and Ethics



Collaborative Project
FP7 GA 289092

유럽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승인의 의미와 전망

최승재 / 세종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수

<Keyword>

개인정보보호규정, 유럽집행위원회, 적절한 보호수준

1. 유럽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의 승인

가. 2016년 5월 4일

2016년 4월 14일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 유럽의회를 통과되었다. 빅데이터 산업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입법 목적을 유럽연합이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기로에 서있는 유럽의 이번 개인정보 보호 규정 통과는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 한편 유럽연합은 개인정보보호규정과 함께 수사기관 개인정보 전달을 규율하는 Directive도 함께 통과시켰다. 20일이 지나면 발효되기 때문에 지난 5월 4일이 발효되었다. 2년 이후에는 개인정보보호규정은 회원국에 직접 적용된다.

본격적인 논의를 하기 전에 유럽연합의 법은 각 회원국에 직접적인 법적 효력을 미치는 Regulation과 회원국에서 입법지침을 주는 Directive로 나뉜다. 유럽시민들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되돌려 주고, 유럽연

합 내에서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균일하고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개인정보보호규정은 Regulation으로 직접적인 효력을 가진다. 이번 개인정보보호규정의 통과로 1995년 이래 개인정보를 보호해왔던 'Directive 1995/95/EC, 이하 1995년 지침'가, 스마트폰의 등장과 이를 통한 모바일 환경으로의 변화,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는 다양한 거래 과정에서 사용되는 유럽연합 시민의 개인정보에 대해서 시민 개개인이 종래보다 더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유럽연합의 기대인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그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나. 주요내용

1) 일반적 금지

1995년 지침은 개인정보를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것은 금지하였다. 다만, 제3국이 적절한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체계(an adequate level of protection)를 갖춘 경우는 예외로 하였다(제25조). 2016년 개인정보보호규정 제44조와 제45

조는 1995년 지침의 원칙적 금지라는 태도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 때 적절한 보호수준이라는 기준은 개인정보의 성격,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과 기간, 개인정보의 최초 이전국과 최종 도착국, 제3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률 규범, 직무 규정 및 보안조치 등 개인정보 이전을 둘러싼 모든 환경이 고려하여야 한다.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작업반의 적절성 평가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적 판단 기준과 절차적 판단 기준에 의하여 보호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 때 적절성 평가는 '법률로 동일한 수준의 개인정보보호를 하는 국가로 이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이에 반해 표준계약서 또는 구속력 있는 기업 규칙(Binding Corporate Rules)은 계약으로 동일한 수준의 개인정보보호를 하는 기업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2) 적절한 관할

95년 지침 제25조는 EU 사법관할 외의 국가가 적절한 수준의 개인정보보호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는 집행위원회(EC)가 판단한다. 해당 국가가 적절한 보호체계를 갖추고 있을 경우 정보 이전을 위한 별도의 장치(표준계약 등)는 필요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서 2016년 개인정보보호규정 제44조와 제45조는 기존 지침 하에서 이뤄진 적절성 판단은 본 규정 하에도 계속해서 적용된다고 하면서, 적절성 판단(Adequacy Assessment)이란 집행위원회(EC)가 국가별로 판단한 구체적 결과로서 적절성 여부를 의미한다고 본다. 여기서 말하는 적절성 판단이란, 제3국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에 대한 적절성(Adequacy)을 평가하여 이전을 허용하는 방식이다(White list Model). 이를 위해서 절차를 보면, 우선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가 제안을 하면 회원국 감독 당국 등으로부터 의견수렴절차를 거친다. 그리고 제31조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이후 집행위원회협의회의 결정으로 채택된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침으로써 부가적인 안전조치 없이 28개 유럽연합회원국과 노르웨이 등 3개의 EEA(European Economic Area) 회원국으로부터 제3국으로 개인정보 이전이 가능해진다. 2016년 현재 적절성 평가를 받은 국가는 12개 국가 외에 New Zealand(2013), 미국(EU-US Privacy Shield, 2016)이 있다.

3) 표준 데이터 보호 조항

(Standard Data Protection Clauses)

95년 지침 제25조는 집행위원회가 승인한 표준계약 조항(Standard Contractual Clauses)을 사용할 경우, EU 사법관할 외의 국가로 개인정보를 합법적으로 이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이를 표준 데이터 보호 조항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서 2016년 개인정보보호규정 제45조는 표준데이터 보호조항(Standard Data Protection Clauses)으로 용어가 변경되었지만, 기존 지침에 따라 집행위원회가 승인한 표준계약 조항은 본 규정 시행 후에도 유효한 개인정보 이전 장치로 인정하고 있다. 또 제46조는 표준계약 조항을 사용하여 개인정보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감독당국의 별도 허가가 필요 없다. 다만, 유효한 표준계약이 되려면 집행위원회가 채택한 것이거나, 감독당국이 채택하고 집행위원회가 승인한 것이어야 한다. EU는 동의 기반의 국외 이전 정책을 운용하는 한국과는 달리 계약 형태의 국외 이전을 허용하고 있다. 표준 계약 제도는 개인정보 보호체계가 서로 달라 개인정보 이전에 따라 야기되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계약적인 해법을 제시함으로써 한편으로 프라이버

시를 고려한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흐름 촉진하면서도, 국제상거래를 위한 정보의 이전 허용함으로써 개인정보이전에 관한 국제적 거래에서의 보안성과 확실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결국 사적자치의 원칙을 존중하면서도, 집행 안전장치(Enforcement Safeguards)를 둠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감독기구의 간접적 개입을 허용하고 있다.

4) 구속력 있는 기업 규칙 (Binding Corporate Rules)

다국적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에 대한 적합성을 EU회원국 감독기구가 평가하여 다국적 기업 내 국외 이전 허용여부를 결정한다. 개인정보 국외이전을 허용받기 위한 구속력 있는 기업 규칙이 되려면 다음의 각 사항이 규칙에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 ① 정보의 흐름을 처리하는 것이 EU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부합하여야 한다. 또 ② 내부적인 시행 절차는 자가진단 및 감사, 규칙의 준수를 입증할 수 있는 정보주체에 대한 규칙 및 수단의 투명성, 불만 및 고충처리, 제재수단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③ 구속력 있는 기업 규칙을 대내외적으로 준수하기로 하는 책임이 계약서 등에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 2015년 2월 현재 규칙이 승인된 기업은 모두 65개이다.

5) 예외

95년 지침 제26조는 적절한 보호체계를 갖추지 않은 국가로의 개인정보의 이전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로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이전에 명확하게 동의한 경우, 정보주체와의 계약을 이행 또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의 이익과 관련된 제3자와의 계약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적 청구권을 확립하고 행사하거나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의 중대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이전된 정보가 공적 장부로부터 나온 경우를 열거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서 2016년 개인정보보호규정 제46조는 95년 지침의 예외사항이 계속해서 적용된다고 하면서, 빈번하거나 대량의 개인정보이전이 아닌 경우로서, ① 개인정보의 이전이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② 개인정보의 이전과 관련된 상황들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로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였을 경우도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2. 유럽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승인의 의미와 전망

EU 집행위는 디지털 단일시장(Digital Single Market)을 10대 선결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여 유럽 인터넷 기업들의 활성화를 위한 EU 차원의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유럽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에 의한 국외이전 조항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도, 동시에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및 정보의 유통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국외이전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최대 2,000만 유로 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직전 년도 전 세계 연 매출액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강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 유럽의 이번 규정개정은 향후 국경을 넘나드는 개인정보의 흐름에 큰 영향을 줄 것이고 우리나라도 그 영향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이를 분석하고 우리나라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과 그렇지 않은 사항을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KISO JOURNAL

<참고문헌>

the Data Protection Directive (officially Directive 95/46/EC)

the Proposal for the EU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European Commission. 25 January 2012.



포털사이트의 20대 총선 특집 서비스 특징

장우영 / 대구가톨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Keyword>

20대 총선, 선거공론장, 포털 서비스



1990년대 민주화와 정보화가 교차하기 직전의 선거캠페인의 무게중심은 대면 접촉에서 TV 토론과 광고로 넘어가는 과도기였다. 서구와 비교하면 상당히 때늦었지만 민주화의 분수령을 넘으며 우리사회에도 매스미디어 선거정치 시대가 개막되었다. 그리고 곧이어 온라인공간과 포털사이트가 등장하면서 온·오프의 경계를 넘나드는 미디어 캠페인이 정착되었다. 오늘날 포털사이트는 가장 유

력한 선거캠페인 채널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국민 대다수가 포털사이트에 정주하는 현실이 전개되면서 포털의 뉴스 서비스를 중심으로 유권자와 후보·정당이 교호하는 융합형 선거가 정착된 것이다.

20대 총선에서도 주요 포털사이트는 총선 특집 페이지를 개설하여 뉴스 서비스를 매개한 선거공론장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포털사이트의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첫째, 공간적으로 분할된 개별 선거구 현황을 집약하여 유권자가 후보·정당의 정책과 선거 동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였다. 둘째, 유권자의 관심이 쏠린 여론조사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표심의 변화를 공유하고, 투개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선거의 전 과정을 대중적으로 증개하였다. 셋째, 뉴스 서비스와 공론 활동을 매개하여 유권자가 선거이슈의 형성과 파급에 직접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선거과정의 청중이 아닌 주체로 역할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였다. 넷째, 이를 통하여 릴레이 투표독려운동과 같은 독창적인 참여형 선거문화가 더욱



<그림 1> 다음카카오 20대 총선 서비스 페이지



<그림 2> 네이버 20대 총선 서비스 페이지

크게 촉진되어 투표율 향상에 기여하였다. 다섯째, 방송이나 소셜미디어와 연계하여 정보를 유기적이고 폭넓게 전달하였는데, 특히 이는 모바일을 통하여 효과가 크게 증폭되었다.

<표 1>은 양대 포털의 20대 총선 특집 페이지(이하 ‘특집 페이지’)의 주요 메뉴를 정리한 것이다. 개괄하면 특집 페이지는 메인 톨바, 중하단 섹션, 링크로 이루어진 프레임과 그에 관련된 하위 메뉴로 구성되었다. 메뉴 구성이 상이하긴 하나 양 포털은 후보자 정보와 총선 뉴스, 이슈 흐름과 격전지 동향, 여론조사 결과, 유권자의 목소리와 투표 인증샷, 방송사와 제휴한 투개표방송 서비스를 공통적으로 제공하였다. 아래에서는 카카오와 네이버

를 중심으로 이러한 서비스의 특징을 비교해 보기로 한다. 이어서 양 포털의 서비스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카카오 서비스의 특징은 모바일 기반의 서비스를 활성화한 것이었다. 카카오는 다음앱과 카카오톡을 연계해서 내 투표소 찾기, 투표 인증샷, 선거방송 생중계, 전원책·정봉주의 정치토크 등의 메뉴를 제공하였다. 가령 내 투표소 찾기의 경우 다음앱이나 카카오톡 샵(#) 검색을 통해 투표소를 입력한 뒤 성명과 생년월일을 추가 입력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지도와 깃찾기를 통한 경로 정보를 함께 제공하여 유권자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국내 소셜미디어 중에서 카

<표 1> 양 포털의 20대 총선 특집 페이지 개요

메뉴	카카오 서비스	네이버 서비스
메인 톨바	선거결과, 격전지, #함께	개표현황, 뉴스, 여론조사, 후보자,
중하단 섹션	키워드로 총선읽기, 아는 만큼 재미있는 선거, 종합, 지역구 개표결과, 비례대표 당선자, 투표율, 소원을 말해봐, 투표 인증샷, 투표 2형식	포토뉴스, 그래픽 뉴스, 지역구 의원, 비례대표 의원, 주요뉴스, 실시간 뉴스, 이슈 타임라인, 후보자 통계,
방송 연계	SBS	KBS

카오톡 이용자가 가장 많고 전 세대와 연령대를 고루 포괄하는 현실에서 특히 카카오톡 샵 검색을 이용한 서비스는 많은 관심을 이끌었다. 즉 투표소 찾기 외에도 선거 일정, 투개표 절차 정보, 후보 정보, 관심 선거구 동향, 선거구별 여론조사 정보, 투개표 실황 등을 검색한 후 그 결과를 채팅방의 친구와 공유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그리고 카카오톡에서 응답하라 4·13과 친구를 맺으면 선거 정보를 꾸준히 받아볼 수도 있었다.

다음으로 네이버 서비스의 특징은 업그레이드된 뉴스 서비스였다. 즉 네이버는 이용자들의 다양한 취향을 반영해서 선거 관련 뉴스를 특징적으로 배열하여 선택적 이용을 촉진하였다. 가령 시차 순으로 선거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주요 뉴스를 제공하였는데, 특히 주요 선거이슈를 시계열적으로 구성한 이슈 타임라인이 큰 이목을 끌었다. 그리고 최신 뉴스를 집약한 실시간 뉴스와 언론사의 그래픽 뉴스만 선별한 그래픽 뉴스가 이용자의 가독성을 높였다. 아울러 여론조사 결과도 그래픽으로 재구성해 제공함으로써 유권자들이 관심 선거구의 지지율 변화 추이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카카오의 경우 다음 뉴스에서 가장 많이 읽힌 정치 기사를 자동으로 선별해 실시간 이슈 키워드와 함께 그래픽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양 포털은 총선 특집 서비스를 위해서 기존의 편집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옴부즈맨 제도를 운영하였다. 우선 네이버는 공정성·정확성·독립성 원칙에 입각한 네이버 4·13 총선 기사배열 지침을 공개했다. 총선 기사배열 원칙에는 '공정한 선거정보 제공, 충실하고 정확한 내용 전달, 유권자들의 의견을 보여주고 참여하는 공간 마련, 기사 배열자 윤

리기준 준수' 등이 포함되었다. 카카오도 총선 서비스 준칙과 함께 이용자 맞춤형 콘텐츠 추천 시스템인 루빅스(RUBICS) 알고리즘이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면서 미디어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대표적으로 다음 첫 화면에는 루빅스가 100% 적용되었다(서울파이낸스신문, 2016.03.24.).

양 포털 서비스의 백미는 총선 당일의 투개표 중계였다. 우선 네이버는 선거 당일 투개표 특별 페이지를 개성해서, 전국 선거구별 투개표 현황, 정당별 의석수, 화제의 선거구, 전국 현황, 격전지, 지역별 현황, 비례대표, 종합현황 코너에 체계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네이버 지도를 활용해서 투개표 상황을 입체적으로 보여주었다. 보도기사(뉴스핌, 2016.04.13.)에 따르면, 종전의 네이버 서비스는 투개표 현황을 시간 단위로 업데이트하는 방식이었는데, 20대 총선에서는 자동 연동방식으로 현장감 있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지도에 선거정보를 추가하는 수준을 넘어 KBS가 보도하는 실황 데이터를 전국 253개 지역구에 연동하는 기술을 과시하였다.

이어서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총선 당일 투개표 중계 페이지를 개설하였다. 주요 콘텐츠로는 투표율 추이, 출구조사 결과, 박빙 승부처, 정당별 예상 의석수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였다. 이 서비스 또한 다음앱과 카카오톡으로 동시에 제공되었다. 가령 카카오톡 샵 검색을 이용해서 투개표 현황을 친구들과 공유하고, 카카오TV로는 총선 개표방송을 시청할 수 있었다. 카카오는 SBS 개표방송을 생중계하였다. 이밖에 정치평론가(전원책, 정봉주)를 활용한 정치토크 여야본색 생중계도 많은 관심을 끌었다.

마지막으로 양 포털 서비스에서 나타난 특기할 만한 점은 일반 통념에서 벗어난 이슈 분포였다. 필자가 조사기관과 협력해서 총선거기간의 양 포털 뉴스를 분석한 결과, 안보이슈 16.6% 대 비안보이슈 83.4%의 비율을 나타냈다. 20대 총선에서도 북한 미사일 발사 실험이나 해외식당 종업원 탈북 사태 등의 안보이슈가 발생했지만, 휴전선 총격이나 천안함 사건 등 과거의 북풍에 비해 선거에 미친 파급력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이와 관련해서 특기할 만한 것은 예단과 달리 총선 특집 페이지의 선거기사 중 안보 이슈가 차지하는 비중이 네이버보다 카카오가 더 크고 빈도수도 더 많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안보이슈에 대한 평균 댓글수는 네이버가 다음에 비해 3배 이상 많

은 반면, 비안보이슈에 대한 평균 댓글수는 카카오가 더 많았다. 카카오 내에서는 비안보 이슈에 대한 평균 댓글수가 안보이슈에 대한 평균 댓글수보다 약 2.2배 많았다. 반대로 네이버 내에서는 안보이슈에 대한 평균 댓글수는 비안보이슈에 대한 평균 댓글수보다 1.7배 이상 많았다. 요컨대, 양 포털사이트 자체의 선거이슈 형성 편향성은 선입견에 불과한 반면, 각 포털사이트 이용자들의 이슈에 대한 선택적 반응성(selective reactivity)은 대단히 두드러지게 나타났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동향에 비추어보건대, 향후의 총선 특집에서는 포털과 유권자가 선거공론장을 함께 분석하고 서비스 개선을 도모하는 기획을 모색하는 방안을 권하고 싶다.KISO JOURNAL

인터넷, 20대 국회에 바란다

김익현 / 지디넷코리아 미디어연구소장

<Keyword>

빅데이터진흥법, 사이버테러방지법, 은산분리

1. 들어가는 글

20대 국회가 마침내 닳을 올렸다. 물론 새로울 건 없다. 매 4년마다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면서 야심한 첫 발을 내딛기 때문이다.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면 새 국회에 거창한 주문을 하는 게 새삼스러울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을 놓고 보면 이번 국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새로운 기술 때문에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 정도로 현란한 변화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연초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띄운 '4차산업혁명' 화두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지난 3월 열린 이세돌 9단과 구글 알파고 간의 바둑대결 여파로 인공지능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한국의 삼성을 비롯해 구글, 페이스북 등 내로라하는 IT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상현실(VR) 산업도 막 태동기를 맞고 있다. 애플과

구글 같은 대형 IT 기업과 테슬라 같은 전문 기업이 경쟁하고 있는 자율주행차 역시 새로운 세계의 문턱에 도달해 있다. 여기에다 최근 몇 년 동안 주요 키워드에 단골로 올라온 빅데이터 이슈도 만만치 않다.

이런 새로운 기술은 혼자 뿌리를 내릴 순 없다. 연구실 차원에서야 모든 게 가능하지만 현실 속으로 들어오는 순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기존 법의 영역을 벗어나는, 혹은 기존 법으로 규정하기 애매한 상황들 때문이다. 이런 부분을 메워주는 것은 국회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특히 요즘처럼 기술이 빛의 속도로 진화하는 시기엔 현실의 질서를 흔들리지 않으면서도 미래 산업 발전의 터를 닦아주는 쪽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2. 20대 국회가 풀어야 할 현안들



20대 국회에서 첫 발의된 법안은 ‘빅데이터진흥법’이다. 배덕광 의원을 비롯한 14명이 공동 발의한 이 법은 비식별 개인정보 취급을 대폭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빅데이터 산업을 진흥하기 위해선 동의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기본 입법 취지다. 물론 비식별 데이터에 한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

이 외에도 20대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터넷 관련 법안은 적지 않다. 당장 대기업의 인터넷은행 참여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소위 ‘은산분리 완화’가 은행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이다. IT 대기업의 지분 출자 제한 규정이 계속 유지될 경우엔 핀테크 사업을 하는 인터넷은행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다라는 게 법안 개정을 찬성하는 쪽의 주장이다.

이철우 의원을 비롯한 122인이 발의한 ‘국가사이버안보에 관한 법률안’은 19대 당시부터 논란이 많았던 법안이다. 사이버 테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 산하에 ‘국가사이버안보정책조정위원회’를 두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하지만 이 법은 사이버 테러에 대한 개념 규정이 모호하다는 비판과 함께 국민 감시와 사생활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아 엄청난 논란이 예상된다.

세계 인터넷업계의 뜨거운 이슈 중 하나는

‘잊힐 권리’ 문제다. 유럽연합(EU)과 미국 등에선 몇 년째 잊힐 권리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선 상대적으로 잊힐 권리 법제화 논의는 강하지 않은 편이다. 대신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을 적용했다. 본인이 삭제하기 힘든 글을 삭제하거나 접근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제3자가 올린 게시물에 대해선 적용하기 힘든 부분이 허점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이 부분 역시 논쟁의 대상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적지 않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비롯해 신기술을 법적으로 포괄해야 할 영역이 적지 않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통합방송법 역시 넓게 보면 인터넷 유관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쟁점들 역시 변화된 기술 환경을 반영하면서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힘든 작업이 필요한 영역이다.

3. 먼 미래를 내다보는 대승적 관점을 기대한다

이 외에도 여러 쟁점들이 20대 국회의 도마 위에 올라올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런 쟁점 법안들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것이냐는 점이다. 19대 때처럼 여야가 당리당략으로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엔 핵심은 놓친 채 엉뚱한 공방만 계속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자. 모든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면서 사이버 테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떤 형태로든 짚어줄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런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법을 추진하는 쪽이 좀 더 열린 자세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사이

버테러 방지란 큰 목표도 중요하지만 사생활 보호란 기본권 역시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이다. 자칫하면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파놉티콘’에 가둬놓는 불상사가 있을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테러 방지란 미명하에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안에 대해서 극히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빅데이터육성법이나 ‘은산분리’도 마찬가지다. 두 법 모두 새로운 기술 수용이란 밝은 면 뿐 아니라 개인정보 남용이나 대기업의 과한 영향력 행사란 어두운 그림자도 함께 갖고 있다. 21세기 인터넷 세상의 질서를 규정할 대부분의 법들은 대부분 이런 양면성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 규제 범위를 과하게 잡을 경우엔 육성보다는 통제 쪽에 방점이 찍히게 되고, 지나치게 흐릿하게 규정할 경우엔 있으나마나 한 법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 쪽에만 지나치게 많은 의미를 부여할 경우엔 절대 반대 외엔 방법

이 없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이 건전한 토론 문화다. 그 과정을 통해 서로의 약한 고리를 메워주는 지혜가 필요하단 얘기다.

지금 세계 경제는 4차산업혁명의 격랑에 대비해야 하는 큰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런 시대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선 국회부터 눈앞에 이익보다는 첨단 ICT 흐름을 잘 반영할 수 있는 토대를 닦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이제 막 발을 댄 20대 국회가 그 역할을 잘 감당 해주길 바란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영입된 각 당의 IT 전문가들이 최근의 기술 흐름을 잘 읽으면서 여야가 초당적으로 머리를 맞대는 문화를 만들어주길 간절히 기원한다. 3당 비례대표 1번 의원들이 ‘4차산업혁명 포럼’을 결성했다는 소식이 그 어느 때보다 반가운 건 이런 배경 때문이다. 모쪼록 이런 협력과 균형을 바탕으로 20대 국회가 4차산업혁명 시대의 초석을 놓는 멋진 공론의 장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KISO JOURNAL

해외 인터넷 자율규제의 동향 및 시사점

김유향 /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장 · KISO저널 편집위원

<Keyword>

인터넷 핫라인, 자율규제, 해외 인터넷 규제

1. 들어가는 말

인터넷 규제에 대한 논의는 인터넷의 역사와 더불어 시작되었지만, 1996년 대표적인 인터넷 자율규제기구인 영국의 IWF(Internet Watch Foundation, 이하 IWF)와 1997년 독일의 자율규제 업계단체인 FSM(Freiwillige Selbstkontrolle Multimedia-Diensteanbieter, 이하 FSM)이 등장한 이후 각국에서 인터넷 자율규제기구가 속속 설립되었고, 자율규제는 인터넷 규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주목받아왔다. 그러나 인터넷 생태계는 스마트폰의 급속한 보급과 SNS를 비롯한 인터넷 기반 서비스의 확산으로 급변해왔으며,¹⁾ 이와 더불어 인터넷 규제 논의의 지형 및 문제의식도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변화된 인터넷 생태계 환경 하에서 인터넷 자율규제는 어떤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또 어떻게 변해왔는가? 이에 대해서는 정작 자율규제 논의의 초

기만큼 활발하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이 글에서는 인터넷 자율규제의 역사에 대한 간략한 개관과 더불어 최근 해외 주요국에서의 인터넷 자율규제가 직면한 도전, 변화양상과 특징을 살펴보고 국내에의 시사점을 고민해 보고자 한다.

2. 인터넷 자율규제의 역사

규제 일반의 모델이 일반적으로 그러하듯 인터넷규제는 시장모델, 정부모델, 자율모델로 구분할 수 있다. 미국은 전형적으로 시장모델, 그리고 유럽과 일본은 정부모델과 자율모델이 결합하는 방식의 인터넷 거버넌스를 발전해왔는데, 세계적으로는 정부모델과 자율모델이 결합된 방식이 좀 더 많은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인터넷에서 자율규제의 등장과 역사는 신속성, 다양성, 개

1) TNS인프라테스트와 구글의 자료를 인용한 KT경제경영연구소의 보고서에 의하면 2014년 세계 56개국 성인인구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평균 60%에 이르며, 한국은 83%로 세계 4위의 보급률로 나타났다. KT경제경영연구소, '2015년 상반기 모바일 트렌드' DIGIECO, 2015. 7. 8. available: http://www.digieco.co.kr/KTFront/report/report_issue_trend_view.action?board_id=issue_trend&board_seq=10349

방성, 연결성 등 국가의 규제가 직접 작용되기 어려운 온라인 공간의 특성과 긴밀한 연관을 가진다. 나아가 인터넷 규제의 어려움은 특히 인터넷이 사람들의 일상에 긴밀하게 밀착된 보편적 매체가 되면서 인간의 삶과 분리할 수 없게 되고 표현의 자유 등 인간의 존재의 문제와 결부되어 왔기 때문이다. 여기서 자율규제의 의미와 효용성이 부각되면서 인터넷 규제의 주요한 틀로서 발전해 왔다.

인터넷 자율규제는 또한 국가의 역할에 따라 자발적 자율규제, 부분위임 자율규제, 완전위임 자율규제로 구분할 수 있다. 자발적 자율규제의 경우는 정부개입 및 법률적 근거가 전혀 없이 순수하게 시민 및 소비자의 자발성에 근거해서 운영되는 것으로 미국의 자율기구들이 대표적이다. 부분위임 자율규제는 정부의 법률적 승인에 의해 자율규제기구가

만들어지며 정부가 콘텐츠 규제의 일부 권한을 법률에 의거하여 위임하는 방식으로서 프랑스의 FDI가 대표적이다. 한편 완전위임 자율규제는 정부의 법률적 승인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뉘지만 기본적으로 정부가 자율규제기구에 완전하게 권한을 위임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완전위임자율규제의 경우 정부에 의해 권한의 위임이 이루어질지라도 사실상 정부와 제도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으면 영국의 IWF, 독일의 FSM, 일본의 IAjapan(Internet Association Japan, 이하 IAJ)을 비롯한 자율규제기구들이 대표적이다.

또한 각국에서 많이 채용하고 있는 인터넷 공동규제모델의 경우 자율모델과 정부모델을 결합한 방식으로 여기에는 누가 주도적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정부중심형과 민간중심형으로 나뉜다. 정부중심형의 대표적 모델은

<표 1> 해외 인터넷 자율규제 모델의 유형

	자발적 자율규제	부분위임 자율규제	완전위임 자율규제
정부 개입	없음	법률적 승인/관리/감독	법률적 또는 정책적 승인
기구의 법률적 위상	없음	법률적 지위	법률적 지위 또는 그에 준하는 제도적 협력 지위
정부기구와의 관계	위임 관계없음	법률적 위임	법률적 위임 또는 그에 준하는 제도적 협력 관계
담당 자율기구 수	복수	단수 또는 복수	단수 또는 복수
자율기구 형태	비영리법인	비영리 법인	비영리법인
자율기구 운영	다양	이사회(정부 인사 포함 가능)	이사회
자율기구의 주요 기능	교육/핫라인/정책연대	교육/핫라인/정책연대/분쟁조정	교육/핫라인/정책연대/분쟁조정
자율기구의 재정	기금, 기부, 회비 등 다양	기금, 기부, 회비 등 다양	기금, 기부, 회비 등 다양
심의 콘텐츠	불법 콘텐츠	불법 콘텐츠	불법 콘텐츠
해당 국가	미국	프랑스의 FDI	영국, 독일, 일본, 프랑스 AFA

프랑스의 FDI이고, 영국, 독일, 일본은 민간중심형 공동모델의 대표적 사례이다.

인터넷 자율규제에서 주된 규제의 대상은 불법·유해콘텐츠이었으며, 이들 콘텐츠에 대한 모니터링, 레이팅, 신고·차단 등을 통해 불법·유해콘텐츠의 생산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불법·유해콘텐츠의 범위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조금씩 상이한 해석이 이루어져왔는데, 유럽과 일본 등은 특히 아동포르노그래피 차단에 집중하며, 기타 인터넷 일반에 대한 규제시도는 하지 않기에 표현의 자유 등의 우려는 제기되지 않았다 할 수 있다.

3. 최근 해외 인터넷 자율규제 동향

인터넷 자율규제를 발전시켜온 해외 주요국의 자율규제모델 및 주요 기구들은 최근 인터넷 산업의 성숙과 인터넷 생태계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 성격과 역할에 있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다양한 변화의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해외 인터넷 자율규제모델 및 기구의 역할에 있어 변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 자율규제기구의 역할 중 핫라인의 중요성과 역할이 커지고 있다. 인터넷 자율규제기구들이 설립 초기 담당하였던 주요기능으로는 교육, 핫라인, 정책연대, 분쟁조정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 불법 콘텐츠에 대한 고지 및 삭제 방식의 핫라인 운영과 미디어 교육에 대한 역할이 강화되고, 정책연대와 분쟁조정기능은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정책연대는 인터넷 관련 정책이 성숙되고 인터넷 자율규제기구들의 역할이 전문화, 세분화되면서 최근에는 각국에서 발견하기 힘들며, 분쟁조정업무 또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또 법률적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정부 또는 법적인 기구를 통해 처리하는 방향으로 정리되고 있다.

해외에서 운영되고 있는 인터넷 자율규제 핫라인은 크게 공공기관형 및 민간기관형으로 나눌 수 있고, 민간기관형은 또한 인터넷 사업자형과 민간단체형으로 나눌 수 있다. 공공기관형은 공공기관의 인터넷 규제 과정에 규제절차를 보완하는 신고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것으로서 대표적으로 미국의 CyberTipLine이 있다. 민간기관형 중 인터넷 사업자형으로는 IWF가 대표적이며, 민간단체형으로는 정보소비자 측면의 활동형태로 노르웨이, 스웨덴의 핫라인들이 해당된다. 이중 대표적인 모델로서 영국의 IWF는 신고중심의 자율규제모델의 전형으로서 이후 각국에서 핫라인을 구축하고 발전시키는데 많은 영향을 미쳐왔다. 핫라인이 인터넷 자율규제의 대표적 기능이 되었던 이유는 정부의 단속이나 민간기구의 모니터링만으로는 인터넷상의 엄청난 콘텐츠를 모두 통제할 수 없고, 신고중심의 핫라인의 효과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핫라인은 독일과 프랑스는 물론 일본에서 크게 성과를 내고 있으며, 시장주도형 자발적 자율규제를 추구해왔던 미국의 경우도 핫라인 모델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핫라인 모델이 크게 발전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2006년 IAJ²⁾와 안심네트워크만들기 촉진협의회(Japan Internet Safety Promotion Association)³⁾ 등이 자율규제기구로 활약하고 있

2) IAJ 홈페이지, available: <http://www.iajapan.org/>

3) 안심네트워크만들기 촉진협의회 홈페이지, available: <http://www.good-net.jp/>

는 가운데 인터넷핫라인센터(インターネット・ホットラインセンター)⁴⁾라는 불법유해정보의 신고처리만을 담당하는 기구를 운영하여 큰 성과를 올리고 있다. 또한 미국의 경우 아동, 청소년 실종 및 성적 착취 등이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핫라인 모델이 효용성을 입증하면서 실종 및 착취 받는 아동관련 신고센터인 CyberTipLine⁵⁾과 학부모단체가 중심이 되어 운영되는 ikeepsafe등이 유럽과 일본의 인터넷 자율기구의 역할과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핫라인의 중요성과 역할이 커지면서 정부와의 협력, 신고절차의 간편화, 국제 공조 등이 요구되었고, 그 결과 인터넷 자율규제기구들도 정부와의 협력이 중요해 졌다. 즉 국내적으로는 정부사법당국과의 협력을 통한 신고절차 간편화와 신속한 처리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인터넷 핫라인제공자의 국제적 단체인 INHOPE(온라인아동성착태에 대한 45개국 51개 핫라인) 등을 통한 국제적 공조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각국의 인터넷 자율규제기구들로 하여금 국내적으로는 정부와의 협력, 국제적으로 다른 자율규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기구의 기능과 역할을 조정하게 하였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인터넷 자율규제기구의 역할 중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자율규제의 초기의 경우 인터넷 자율규제기구의 역할 중 교육은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인터넷 불법·유해 정보 유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또한 불법·유해정보의 종류도 다양해지면서 정부와 인터넷 사업자만의 노력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상태

에 이르러 다시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가정 및 학교에서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중요성은 인터넷 보급 초기부터 강조되었던 것이고 많은 국가들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불법유해 콘텐츠의 이용 및 유통이 기술적으로 고도화하고 복잡해지면서 단순히 가정이나 학교에서만 교육으로 해결하기 어려워지게 되고 이에 따라 전문적 역량을 가진 기구에 의한 교육의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최근 인터넷 자율규제에 있어 주요 이슈 중 하나는 아동청소년에 의해 자발적으로 만들어지고 교환되는 성적 콘텐츠(Youth-produced sexual contents)의 처리문제이다. IWF의 2015년 조사에 의하면, 2014년 9월부터 11월까지 아동 성학대 콘텐츠 3803개의 이미지 및 비디오를 분석한 결과, 콘텐츠에 등장하는 아동의 17.5%가 15세 이하였고, 해당 아동 콘텐츠의 85.9%는 웹캠을 사용하여 만들어졌으며, 93.1%가 여성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성 학대 및 범죄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는 당사자 동의 없이 만들어진 아동 음란물(Aggravated)과 달리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만들고 교환한 성적콘텐츠(Experimental)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여기서 가정과 학교만이 아닌 인터넷자율규제기구의 역할로서 교육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특히 온라인을 통한 성적 그루밍 등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아동·청소년 대상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해 정부 및 관련 단체들이 협력해 전문적 교육을 위한 e-netcaravan⁶⁾을 운영하고 있다.

4) 인터넷핫라인센터 홈페이지, available: <https://www.internethotline.jp/index.html>

5) CyberTipLine 홈페이지, available: <http://www.missingkids.com/cybertipline>

6) e-netcaravan 홈페이지, available: <http://www.e-netcaravan.jp/caravan.html>

셋째, 인터넷 자율규제에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 이하 ISP) 등 관련 사업자 및 정부의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생산하는 성적콘텐츠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SNS 및 메신저 등 유통경로가 다양해지면서 이것을 어떻게 찾아내고 삭제할 것인가가 각국 정부 및 인터넷 자율규제기구의 새로운 고민으로 떠오르고 있다. 기존에는 삭제 및 교육과 모니터링, 블랙리스트 지정 등을 통해서도 성과를 거두었지만, 이러한 신유형 콘텐츠의 생산과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기업의 단순한 협조가 아니라 ISP 등의 좀더 적극적인 개입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ISP의 역할이 커지면서 새로운 인터넷 생태계 환경에서의 ISP의 면책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논의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인터넷 자율규제에서 가장 바람직한 모델로 인식되어 오던 기업과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에 대해서도 새로운 인식이 생겨나고 있다. 인터넷 분야의 경우 기업들의 부침이 심하며, 그에 따라 자율규제기구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인터넷 시장의 발전과정을 되돌아보면 10년 전, 20년 전과 현재 시장을 주도하는 인터넷 기업은 완전히 다르며, 인터넷 서비스 분야도 매우 다양해져왔다. 따라서 민간자율규제의 지속성 측면에서는 완전한 시장주도형이나 민간자율규제보다는 정부 지원 하에 민간단체가 주도하고 기업들이 협력하는 방식이 자율규제기구의 지속성 및 존속에 더 유리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다양한 자율규제를 시도해왔던 유럽의 국가들과 일본에 비해 미국은 인터넷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는 방식을 취했기에 다양한 민간기관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자율규제의 형

태로 발전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경우에도 핫라인의 운영에서 나타나듯이 방임 또는 민간중심의 자발적 자율규제에서 점차 정부의 재정적·법률적 지원과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

4. 시사점

해외에서 인터넷 자율규제를 구성하는 주요 내용은 내용심의와 등급규제, 콘텐츠 또는 콘텐츠 제공자에 대한 모니터링과 신고시스템 운영, 그리고 미디어 리터러시 증진을 위한 이용자 교육 등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율규제의 내용은 인터넷 생태계의 변화와 더불어 크게 변화하고 있으면 2000년대 후반 이후 전반적으로 자율규제의 중심축이 이동을 하는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해외 인터넷 자율규제의 현황에 대한 검토 결과, 현재 각국의 인터넷 자율규제기구는 도전에 직면해 있는데, 이들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딜레마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성년자 보호가 우선이나 표현의 자유이냐의 문제이다. 최근 들어서 해외의 인터넷 자율규제의 가장 확실하고 핵심적인 목적은 미성년자 보호가 되고 있다. 아동·청소년 보호는 인터넷 규제논쟁에 항상 따라다니는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불편한 논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소한의 영역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핫라인 등 신고·삭제 시스템이 자율규제 기구의 역할에서 크게 확대되면서 다른 한편으로 핫라인의 과도한 신고·삭제가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즉 핫라인을 통해 그리고 ISP 등 기업의 약관에 의한 삭제와 신

고조치 등이 지나치게 늘어나면서 우리나라의 임시조치를 둘러싼 논쟁과 같이 핫라인에 의한 표현의 자유의 과도한 침해문제가 해외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고유의 가치를 둘러싼 의혹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다소 기능적 선택이었던 핫라인의 발전이 다시 표현의 자유 침해를 가져오고 있는 아이러니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지금 해외 자율규제기구들은 아동·청소년 보호와 표현의 자유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를 어떻게 보호하면서 인터넷상의 불법·유해 콘텐츠 확산을 방지할지에 대해 다시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내용규제 및 콘텐츠 등급화를 주된 역할로 하느냐, 인터넷 미디어교육을 확대하느냐의 문제이다. 자율규제의 초창기에는 내용규제 및 등급화가 중요한 과제였으나, 지금은 미디어 교육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IWF의 경우 대표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등급화와 내용규제 업무를 담당해왔다. 그러나 지금은 블랙리스트를 제공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의 불법·유해정보의 차단주소가 생성되면서 기존의 주요 기능을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이전에는 불법유해사이트 하나를 막으면 차단이 되었으나 지금은 소스가 매우 다양해 졌기 때문이다. 변화된 인터넷 생태계에서는 블랙리스트를 정하고 레이팅을 하는 내용규제가 점점 힘들게 되었는데, 대표적으로 미국의 등급규제 기구인 Internet Content Rating Association(ICRA)는 없어진지 오래이다. 이에 따라 블랙리스트 방식의 등급화 등 내용규제 중심에서 인터넷 리터러시 교육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셋째, 자율규제의 중심축을 정부, 기업, 소비자 각각의 주도성을 강조하는 방식이나 이들 간의 연대를 통한 자율규제이나의 문제이다. 인터넷 자율규제 발전의 초기에는 부분위임형과 완전위임형 공동규제 등 정부의 지원 하에 기업단체 및 민간단체가 자율규제를 담당하는 방식이 좀 더 보편적이었다면, 지금은 정부, 기업, 소비자가 연대하는 방식의 공동규제가 더 효용성을 인정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원 하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주도하는 인터넷 자율규제 방식을 운영해왔으며, 기업단체 및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한 인터넷 자율규제의 시도는 충분히 발전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 사이 해외에서는 다양한 자율규제의 모델들이 시도되고 또 새롭게 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터넷 규제는 자율규제와 공적규제라는 양극단의 연속선상의 어느 지점에 위치한다. 한 국가의 인터넷 규제모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그 국가의 법제, 정치적 구조, 사회문화, 국민적 특성 및 기술적 수준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한다. 따라서 인터넷 자율규제는 그 나라만의 방식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지만, 다른 한편으로 글로벌 인터넷 생태계의 변화라는 측면에 영향을 받고 또 이를 참고하여 바람직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 단계 한국 상황에서 어떤 모델이 최적의 모델이며, 어떤 방식이 가장 필요로 되는지는 한국 인터넷 환경에 대한 보다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진 후 다시금 논의되어야 할 것이지만, 해외 자율규제 기구들의 고민은 우리의 새로운 인터넷 자율규제 모델을 구축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KISO JOURNAL

〈서평〉 브루스 슈나이어 저, 「당신은 데이터의 주인이 아니다」 - 데이터와 골리앗

김민정 /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Keyword〉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빅데이터, 보안, 감시

제 목	당신은 데이터의 주인이 아니다 (원제: Data and Goliath)		
저 자	브루스 슈나이어	역 자	이현주
출판사	반비	출간일	2016년 4월 8일

1. 우리가 사는 세상

천만관객영화 조연으로 유명한 배우 오달수 씨가 출연하는 보일러 광고가 있다. 그는 아내의 무릎을 베고 누워 편안히 귀지청소를 받으며 보일러 관련 질문들을 쏟아낸다. 목욕물은 데워져 있는지, 가스누출 점검은 했는지, 가스비 절약방법은 없는지 등등. 이러한 걱정들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광고 속 아내의 답변은 IoT(사물인터넷) 보일러가 다 알아서 한다는 것이었다. 세계 최고의 보안기술 전문가 중의 한 명으로 꼽히는 브루스 슈나이어(Bruce Schneier)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보일러는 실상 보일러가 아니라 ‘난방과 온수를 담당하는 컴퓨터’인 셈이다. 반려동물과 가족에 전자 칩을 심는 이 시대에 그의 고양이도 ‘하루 종일 햇볕 아래서 잠을 자는 컴퓨터’인 것처럼 말이다. 바야흐로 우리는 ‘전화를 거는 컴퓨터’를 상시 휴대하고 다니며, 검색엔진이 ‘나보다도 나의 생각을 더 잘 파악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IoT 보일러 광고는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가 최적의 온도 조절은 물론 에너지 절약까지 도맡아 주는 생활의 편리함을 강조하며 마무리된다. 슈나이어의 책은 우리 삶에 편재한 컴퓨터들이 끊임없이 생산해내는 데이터

가, 네트워크를 통해 누구에게 흘러가며,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로 인한 문제점들은 무엇 인지를 이야기한다. 슈나이어는 IoT 보일러 광고에서 그려진 류의 편리함과 이점을 폄하하거나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러한 장점들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위협에 주목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2. 빅데이터 감시사회, 위험성, 그리고 대응책

2015년 3월 출간 직후 뉴욕타임즈 논픽션 분야 베스트셀러 6위에 올랐던 슈나이어의 13번째 저서「데이터와 골리앗(Data and Goliath)」의 한국어판이 「당신은 데이터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2016년 4월 출간 되었다. 총 16장으로 이루어진 이 책은 크게 세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제1부에서는 빅데이터 감시사회의 현황을 짚는다. 제2부에서는 이러한 현상들에서 기인하는 문제점들을 진단한다. 제3부는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나름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제1부 ‘빅데이터 감시사회’는 현 정보사회의 데이터 수집, 저장, 분석, 이용 관행을 자세히 조명한다. 온라인 프라이버시 이슈에 관심을 가져 온 독자에게는 다소 익숙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다양한 최신 사례들을 명쾌한 논리 흐름에 따라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서술하고 있어, 빅데이터 사회가 왜 감시(surveillance) 사회인지를 생생히 보여 준다. 슈나이어는 감시사회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감시기술의 발달로 감시는 더 저렴하고 용이해졌고, 정부와 기업들은 무엇을 수집하고 저장할지를 결정하는 것보다 모

든 것을 수집하고 저장하는 것이 더 저렴하고 편리하므로 대량감시(mass surveillance)를 시행해 오고 있는 반면, 시민들은 상시적으로 어디에서나 존재하는 감시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슈나이어는 대량감시사회로의 이행을 끌어 오고 있는 원동력을 정부, 기업, 그리고 이들 사이의 동반자 관계에서 찾고 있다.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정부와, 이용자 데이터 기반 서비스가 비즈니스의 핵심인 기업, 그리고 정부와 기업 간의 협력이 대량감시사회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원서 제목인 「데이터와 골리앗(Data and Goliath)」에서 지칭하는 골리앗은 정부와 기업인 듯하고, 골리앗들은 때로 밀월관계에 있다.

슈나이어는 대량감시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법들 역시 날로 발전해 오고 있어서, 익명화된 데이터를 통해 개인을 식별해내는 일이 손쉬워졌음을 경고하고 있다. 이는 최근 들어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와 개인 정보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방편으로 제시되고 있는 ‘비식별화 기술’이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완벽한 안전장치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제2부 ‘지금 무엇이 위험한가’는 대량감시사회의 폐해, 즉 대량감시로 인해 위협받고 있는 가치들에 대해 실제 사례와 이론적 논증을 통해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다. 정부의 검열로 인한 위축효과와 시민적·정치적 자유의 축소, 기업의 프로파일링 관행이 낳은 부당한 소비자 차별, 정부의 암호기술개발 금지가 초래한 기업 경쟁력 저하, 대량감시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및 국가안보 위협 등 실로 그 폐해의 양상과 층위는 복잡다단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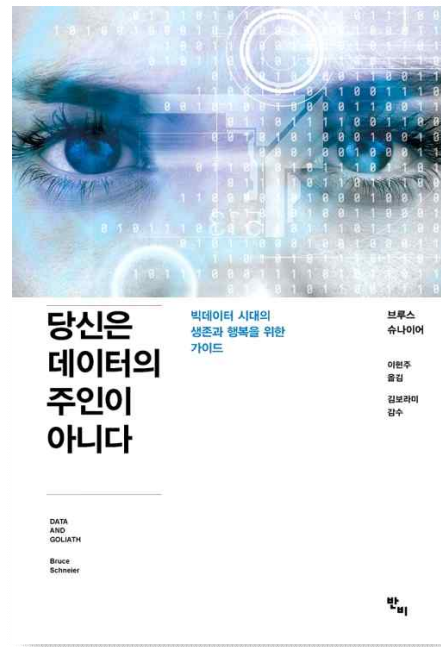
대량감시사회의 폐해에 관한 그의 논의에서 가장 흥미로운 대목은, 보안전문가인 슈나이

어가 ‘대량감시로 인해 사회의 안전과 국가의 안보가 오히려 더 위협받고 있다’고 지목하는 부분이다. 정부는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슈나이어는 데이터 마이닝 기법의 오차율, 각 테러공격의 특이성, 그리고 테러리스트들이 상정하는 적대적 목표를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은 형태로 이루어지는 감시는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효과가 없다고 주장한다.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대량감시가 아니라 표적감시(target surveillance)라는 것이다. 슈나이어는 또한 암호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암호화가 널리 보급되어 네트워크 보안의 취약성이 개선되면, 대량감시로 인해 발생하는 폐해들을 방지할 수 있고 수사기관들은 표적감시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므로, 암호화는 사회 안전보장 및 국가안보에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미국의 NSA(National Security Agency)가 ‘보안’보다 ‘감시’를 우선시하여 미국 사회를 위협에 빠뜨리고 있다는 슈나이어의 주장은, 사이버테러방지법이 논의되고 있는 우리사회에서도 곱씹어볼 부분이다.

제3부 ‘무엇을 할 것인가’는 보안과 프라이버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간 각 국가 단위에서 그리고 국제적으로 천명된 프라이버시 보호원칙들로부터 출발하여, 정부가 취해야 할 노력들, 기업들이 취해야 할 자세들, 개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빅데이터 시대의 새로운 사회적 규범 확립을 위한 제안들까지 담고 있는 대목이다. 슈나이어의 조언과 제언은 오늘부터 당장 쓸 수 있는 것들(예를 들면, ‘컴퓨터 카메라에 스티커를 붙여서 원격으로 카메라를 조종하는 사람이 사용자의 사진을 찍지

못하게 하라’)부터 시작해서, 법·제도 관련 정책적 제안들(‘NSA를 해체하라’, ‘정보 수탁자를 정하라’ 등), 그리고 추상적이지만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선언적 서술들(가령, ‘프라이버시를 재조정하라’, ‘빅데이터가 제공하는 장점과 단점을 모두 바라보라’)까지 다양하다. 제3부는 대량감시 사회의 문제점들에 대한 혁신적인 해결책들을 기대했던 독자에게는 다소 실망스러울 수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의 제언들을 해결책의 완성본이 아니라 초안으로 본다면 충분히 일독의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3. 데이터와 골리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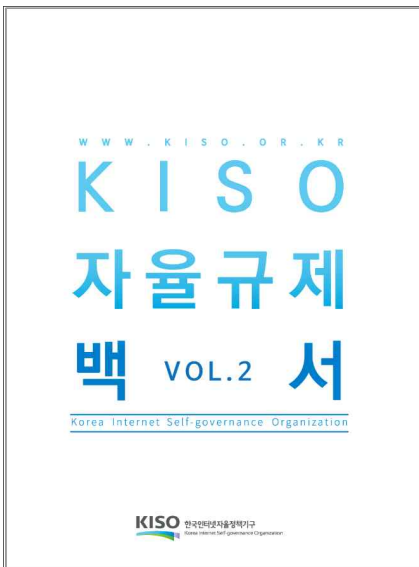
앞서 밝혔듯, 이 책의 원 제목은 「데이터와 골리앗(Data and Goliath)」이다. 슈나이어는 왜 책 제목을 「데이터와 골리앗(Data and Goliath)」이라고 정했을까? 원 제목의 부제인 “당신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당신의 세상을 통제하

고자 하는 숨겨진 전투들(The Hidden Battles to Collect Your Data and Control Your World)”과 연계해서 해석할 때, 정부와 기업이라는 거대한 골리앗과 싸워야 하는 힘없는 개인들을 다윗(David)으로 비유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슈나이어의 책은 자신들이 전장에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다윗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전투의 승자는 다윗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슈나이어는 골리앗이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위협하는 이 전장에서 다윗이 궁극적으로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 희망적인 제목으로 「데이터와 골리앗(Data and Goliath)」을 정한 것은 아니었을까?

혹은, 말콤 글래드웰(Malcolm Gladwell)이 그

의 책 「다윗과 골리앗(David and Goliath)」에서 주장하고 있듯이, 골리앗은 실제로는 강자가 아니었을 수 있다. 골리앗은 말단 비대증을 앓고 있어서 시야 확보가 어렵고 민첩한 행동이 힘들었다고 유추할 수 있고, 따라서 투석병이었던 다윗이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상대였다는 해석이다. 또한, 다윗의 위대함은 자신보다 강해보이는 상대로 싸우겠다고 나간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약점을 잘 파악한 후 전장에 나섰다는 점이라는 것이다. 빅데이터 시대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가 그러해야 하지 않을까. 빅데이터 시대의 골리앗의 정체를 파악하고 다윗들의 전략과 전술을 마련하여 실천해야 할 때이다. KISO JOURNAL

‘KISO 자율규제 백서 Vol.2’ 발간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장 임지훈, 이하 KISO)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의 활동성과를 담은 ‘KISO 자율규제 백서 Vol.2’를 4월 25일 발간했다.

이번 KISO가 지난 3년간 마련해온 102건의 심의결정 원문을 주제별로 구성하여 심의결정의 취지와 흐름을 체계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였다. KISO 심의결정은 개별 결정 하나 하나가 회원사의 자율규제의 공통 기준으로 활용되어, 보다 합리적인 자율규제 기준 마련과 건강한 인터넷 환경 조성에 이바지 하고 있다.

또한, 백서는 대형 포털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터넷 사업자들이 당면한 공동의 자율규제 이슈를 논의할 수 있는 UGC 협의체, 검색어 조작 논란에 따라 약 2년 간에 걸쳐 네이버 연관·자동완성·실시간급상승 검색어를 전수 조사한 검색어 검증위원회, 유해 이미지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보호 DB를 구축한 온라인청소년보호체계구축위원회, 부동산 허위매물 광고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자 출범한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 등 KISO가 다양한 참여자와 함께 소통하며, 내실 있는 자율규제 기준을 마련해 온 여정과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자율규제 활동은 해외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 KISO가 한국적 상황에서 다양한 분야의 자율규제를 사회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도전해 온 기록이라 할 수 있다.

임지훈 KISO 의장은 “KISO 자율규제 백서는 그 간의 활동성과를 통해 한국 인터넷 자율규제의 수립·발전사를 면밀히 보여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면서 “이 백서가 인터넷 산업의 여러 실무자, 전문가를 비롯해 일반 이용자들에게도 의미 있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KISO 자율규제 백서 Vol.2’는 유관기관과 관련 업계에 배포되었으며, 백서 전문은 KISO홈페이지(www.kiso.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KISO JOURNAL

KISO, 선거기간 중 인터넷 자율규제 보고서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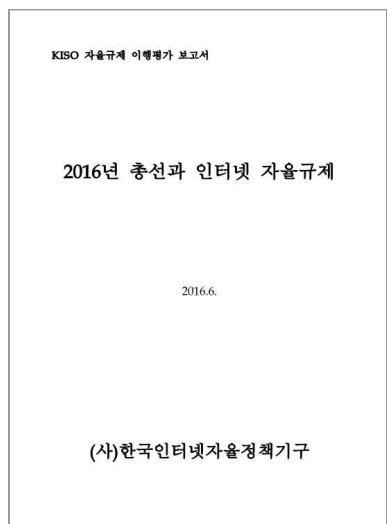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장 임지훈, 이하 KISO)는 6월 28일 ‘2016년 총선과 인터넷 자율규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제20회 국회의원 선거기간 중 공정하면서도 이용자의 알 권리가 충족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KISO 및 인터넷 사업자들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를 담고 있다.

보고서 내용은 KISO 자율규제와 회원사의 노력 등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KISO는 △내부 세미나를 통한 각 사업자 담당자 교육, △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조를 통한 공정 선거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사업자는 △이용자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선거기간 특별 페이지 제공, △공정 선거를 위한 선거기간 중 금지되는 게시물 등에 대한 공지, △게시물 처리에 있어 법령 및 KISO 정책 준수 등을 수행하였다.

특히 KISO 회원사는 법령과 KISO 정책규정을 준수하며, 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선거운동으로 판단하여 공문을 통해 삭제 요청하는 게시물 이외에는 표현의 자유와 이용자 알권리 보장의 차원에서 삭제하지 않았다.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4월 총선에서 KISO회원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후보등록 마감일에서 선거 당일까지(2016.3.24.~4.13.) 총 2,711건의 게시물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KISO 정책위원회 위원장인 이해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가 진정으로 민주주의의 꽃이 되기 위해서는 자유롭고 공정하게 치러져야 하며, 이를 위해 인터넷 사업자들도 자율규제 차원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면서 "지난 총선에서 사업자 및 KISO가 법령을 준수하면서 취한 여러 가지 조치의 취지와 내용을 정리하여 공개함으로써 자율규제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에 이 보고서의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KISO는 이번 ‘2016 총선과 인터넷 자율규제’ 보고서를 홈페이지 (<http://www.kiso.or.kr>)를 통해 공개하고, 이번 보고서를 시작으로 하여 향후 다양한 주제의 자율규제 활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ISO JOURNAL



<KISO저널 제23호>

발행일 2016.6.30.

발행인 임지훈

발행처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표지디자인 신원디마

135-877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7층

(삼성동 143-37, 현대타워)

대표전화 02.6959.5206

대표메일 kiso@kiso.or.kr

홈페이지 www.kiso.or.kr

저널 홈페이지 journal.kiso.or.kr

◆ KISO 저널에 게시 및 수록된 글은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KISO저널 23호의 본문은 '한겨레결체'로 작성되었습니다.

◆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허가 없이 본 내용의 무단전제나 복제를 금지합니다. 내용에 관한 문의가 있으시면 문의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02.6959.5207)

<편집위원>

위원장/황용석 교수(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권현영 교수(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김유향 팀장(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김효섭 차장(네이버 경영지원실)

양현서 차장(카카오 대외협력실)

이원태 박사(KISDI ICT전략연구실)

허정일 팀장(SK커뮤니케이션즈 경영지원실)

황창근 교수(홍익대 법학과)

편집간사/이시은 연구원(KISO 기획협력실)



ISSN 2287-8866(Online)